PM 2021-24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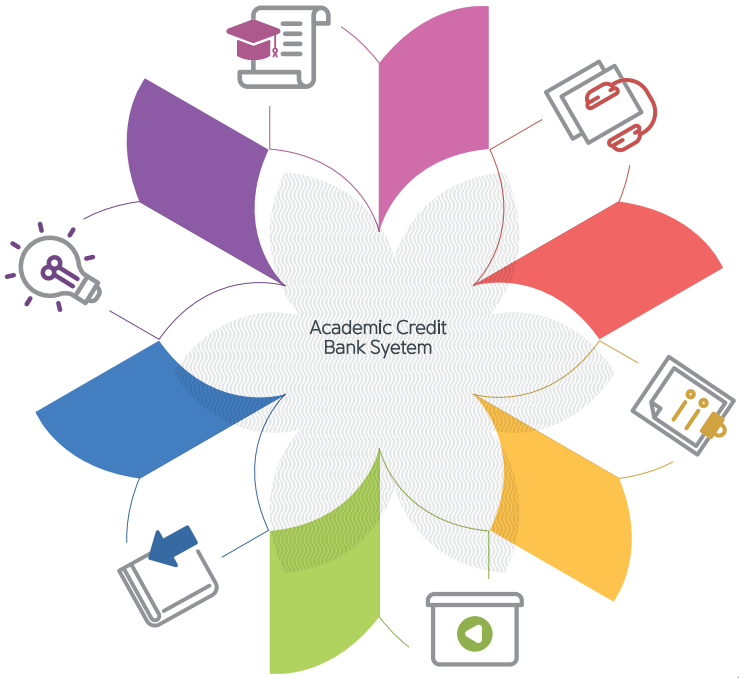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는 학점은행제 유관기관 담당자의 학점은행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발간하는 책자입니다. '학점은행제 길라잡이' 자료와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2021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경사항 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이나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학점인정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I 학점은행제 개요 1

1. 학점은행제 정의 2
2. 학위종류 및 전공 3
3. 학위수여요건 8
4. FAQ 11

Chapter II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15

1. 학점의 종류 16
2. 평가인정학습과정 19
3. 학점인정대상학교 21
4. 시간제등록 22
5. 자격 25
6.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29
7. 국가무형문화재 31
8. 학점인정 주의사항 32
9. FAQ 36

Chapter III 각종 신청 방법 45

1. 학습자등록신청 48
2. 학점인정신청 50
3. 학위신청 54
4. FAQ 55

Chapter IV 학점은행제 활용 69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70
2. 자격(면허)취득 71
3. FAQ 72

Chapter V 학습지원 77

1. 증명서 발급 78
2. 상담 서비스 80
3. 도움자료 82
4. FAQ 84

Chapter VI 부 록 89

1. 각종 증빙서류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예시 90
2. 학점은행제 관련 통계 124
3.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조직도 125

Contents

Table Contents

〈표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고시 현황 4
〈표 2〉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학사 5
〈표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전문학사 6
〈표 4〉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7
〈표 5〉 학위수여요건 8
〈표 6〉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9
〈표 7〉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9
〈표 8〉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요약표 17
〈표 9〉 2021년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현황 24
〈표 10〉 2021년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24
〈표 1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25
〈표 12〉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산출기준 26
〈표 13〉 학점은행제 자격 등급 체계 26
〈표 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27
〈표 15〉 자격등급별 공통시험과목 감산기준 28
〈표 16〉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30
〈표 17〉 독학학위제 과정별 응시자격 30
〈표 18〉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31
〈표 1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31
〈표 20〉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33
〈표 21〉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34
〈표 22〉 중복과목 예시 34
〈표 23〉 대체과목 예시 35
〈표 24〉 학점은행제 신청의 종류 46
〈표 25〉 신청 내용별 제출서류 및 수수료 47
〈표 26〉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48
〈표 27〉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접수처 48
〈표 28〉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49
〈표 29〉 일반적인 학점인정 신청기간 50
〈표 30〉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51
〈표 31〉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52
〈표 32〉 기타 신청종류 및 내용 53

〈표 33〉 기타 신청 종류별 신청방법 53
〈표 34〉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55
〈표 35〉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원별 제출서류 58
〈표 36〉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66
〈표 37〉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67
〈표 38〉 국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68
〈표 39〉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70
〈표 40〉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71
〈표 41〉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78
〈표 42〉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방법 79
〈표 43〉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81

Picture Contents

[그림 1] 학점은행제 소개 2
[그림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10
[그림 3] 학점의 종류 16
[그림 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조회 화면 19
[그림 5]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 기준 22
[그림 6] 자격 학습구분 결정 기준 27
[그림 7]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33
[그림 8] 학기의 구분 33
[그림 9]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54
[그림 10]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페이지 60
[그림 11]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연계신청 페이지 61
[그림 12]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페이지 63
[그림 1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페이지 64
[그림 14] 콜센터상담 도식도 80

학점은행제 연혁

1990년대

1997.01.1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
1997.09.11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제 주관 기관으로 지정
1998.02.28	제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1차 교수요목 고시(41개 전공, 167개 학습과목)
1998.03.01	제1차 출석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1개 교육기관, 274개 학습과목)
1999.08.31	1999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25명, 전문학사:9명)

2000년대

2000.02.21	제1회 학위수여식 개최
2001.08.16	제1차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02.07.18	제1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고시(238개 전공)
2002.11.26	국가무형문화재 평가인정(10개 교육기관)
2004.03.01	제1차 원격기반 학습과목단위 평가인정(6개 교육기관, 42개 학습과목)
2006.03.01	제1차 전공단위 평가인정(40개 교육기관)
2007.08.28	학점은행제 제10주년 기념식 개최
2007.12.14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학점은행제 시행기관 변경
2008.02.15	평생교육진흥원 개원(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은행제 업무 이관)
2008.09.23	학점은행제와 함께하는 2008 희망 한아름 대축제 개최
2012.02.24	2012년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 학위수여식 개최(학사:11,780명, 전문학사:23,216명)
2012.06.1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청사 이전 기념식
2012.08.31	2012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7,910명, 전문학사:14,355명)
2013.02.22	2013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14,836명, 전문학사:24,326명)
2013.02.27	제19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1차 교수요목 고시(218개 전공, 6,118개 학습과목)
2013.08.30	2013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8,009명, 전문학사:20,649명)
2014.02.25	2014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14,868명, 전문학사:45,933명)
2014.03.07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 제·개정 고시
2014.04.09	제18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14.05.14	제20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2차 교수요목 고시(223개 전공, 6,229개 학습과목)
2015.02.25	2015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2,884명, 전문학사: 16,929명)
2015.08.28	2015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 12,376명, 전문학사: 10,675명)

2015.09.2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9.28 시행)
2015.10.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2.23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16.01.06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고시
2016.02.25	2016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4,212명, 전문학사: 16,448명)
2016.05.11	제19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수정 고시
2016.05.12	제21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3차 교수요목 고시(224개 전공, 7,853개 학습과목)
2016.08.31	2016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 14,484명, 전문학사: 9,821명)
2017.02.22	2017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8,279명, 전문학사: 17,349명)
2017.07.31	제20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17.08.31	2017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 19,610명, 전문학사: 17,528명)
2017.10.01	제22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4차 교수요목 고시(225개 전공, 7,872개 학습과목)
2018.01.29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2018.1.9 시행)
2018.02.22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5,316명, 전문학사: 12,848명)
2018.04.11	제23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5차 교수요목 고시(225개 전공, 7,881개 학습과목)
2018.08.31	2018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14,686명, 전문학사:8,757명)
2018.10.01	제21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18.11.1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9.01.01 시행)
2019.02.27	2019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16,395명, 전문학사:13,646명)
2019.05.14	제24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6차 교수요목 고시(225개 전공, 7,881개 학습과목)
2019.08.28	2019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14,083명, 전문학사:8,658명)
2019.12.04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일부개정
2019.12.16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20.02.26	2020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7,550명, 전문학사: 14,399명)
2020.04.07	제25차 표준교육과정(227개 전공, 7,898개 학습과목)
2020.08.28	2020년도 후기 학위수여(학사: 17,262명, 전문학사: 9,854명)
2020.12.10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2021.02.25	2021년도 전기 학위수여(학사: 18,568명, 전문학사: 16,311명)
2021.05.10	제2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8차 교수요목 고시 (227개전공, 7898개 학습과목)

학점은행제 이용 흐름도

STEP 01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

▶학습자 등록 신청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 / 방문신청

STEP 02 학위수여 요건확인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에 따른 학위수여요건 확인

STEP 03 학점취득

학위수여요건 충족을 위한 학점 이수

▶6가지 학점 취득방법

- 평가인정학습과정
- 학점인정대상학교
- 시간제등록
- 자격
- 독학학위제
- 국가무형문화재

STEP 04 학점인정 신청

취득학점 결과에 대한 학점인정신청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 / 방문신청

인정학점 확인

학점은행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에서 확인가능

STEP 05 학위신청 및 학위수여

▶학위신청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취득 완료 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
- 정해진 기간 중 온라인 신청

▶학위수여시기

- 매년 2월/8월 (학위수여식은 2월만 실시)

주의사항: 매 단계마다 학점은행제 제도 이용 주의사항 확인!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학습자등록신청] → [학점인정신청] → [학위신청]을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정 안내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필두로 하여 다양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운영에 기반이 되는 규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비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2015. 03. 27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 11. 03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 12. 03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2018. 11. 13 개정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2021. 02. 19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2021. 02. 19 개정
제26차 표준교육과정	2021. 05. 10 고시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2020. 12. 10 고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2013. 05. 10 개정
2021년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 계획 공고	2020. 11. 26 공고

I

학점은행제 개요

1. 학점은행제 정의
2. 학위종류 및 전공
3. 학위수여요건
4. FAQ

I
학점은행제 개요

01 학점은행제 정의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학점은행제는 평생학습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교육은 물론 다종다양한 평생교육의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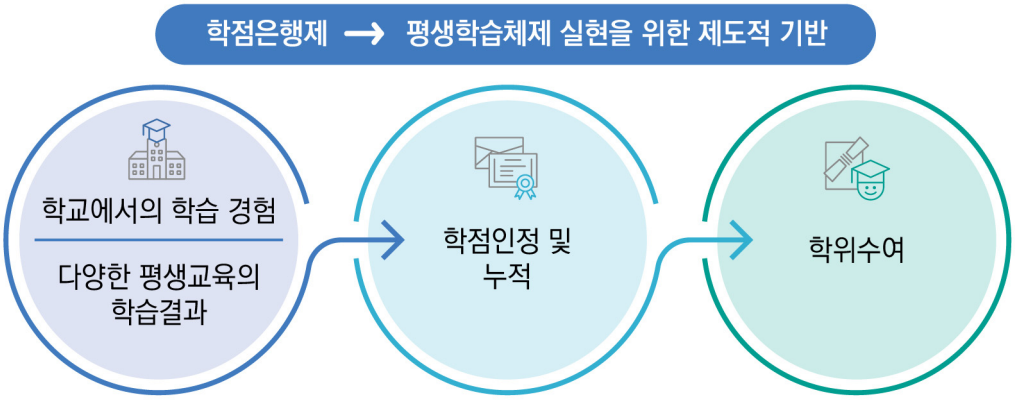

[그림 1] 학점은행제 소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등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학력인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용어해설

- **학점:** 학점은 대학과 평가인정 받은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단위 또는 일정자격 취득 시 그 자격에 상응하여 인정되는 학습단위 등을 말한다.
- **학위:** 학위는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서는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동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한다.
- **평가인정:** 평가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등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교수 또는 강사의 수, 학습시설·설비 및 학습과정의 내용 등 일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02 학위종류 및 전공

학점은행제로 수여 가능한 학위는 **'학사학위'**와 **'전문학사학위'**가 있습니다. 학사는 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하며, 전문학사는 전문대학 졸업 시 주어지는 학위를 말합니다. 학점은행제는 표준교육과정을 고시하여 학위의 종류 및 그에 따른 전공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학습자는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희망 학위 및 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2021년 5월 현재 제26차 표준교육과정이 시행(교육부 고시 제2021-14호, 2021.5.10)되고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표준교육과정)

제5조에 다른 평가인정의 기준, 제11조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의 기준 및 제16조에 따른 학위수여 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교육과정을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1. 학위의 종류에 따른 전공
2. 교양과목 및 전공별 전공과목과 해당 학점
3. 전공별 학위수여의 요건

용어해설

- **표준교육과정:** 표준교육과정은 평가인정의 기준, 학점인정의 기준, 학력인정의 기준 및 학위수여요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 **교수요목:**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목에서 다루는 교육내용의 일반적인 개요를 말한다.

〈표 1〉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고시 현황

(단위: 개)

구분	1차 고시 (98.2.28)	2차 고시 (98.9.2)	3차 고시 (99.2.8)	4차 고시 (99.8.24)	5차 고시 (00.8.11)	6차 고시 (01.3.6)	7차 고시 (01.12.27)
학사	18	56	60	70	73	75	77
전문학사	23	57	64	81	83	84	86
소계	41	113	124	151	156	159	163
구분	**8차 고시 (02.12.31)**	**9차 고시 (03.11.4)**	**10차 고시 (04.10.4)**	**11차 고시 (05.10.13)**	**12차 고시 (07.1.26/7.11)**	**13차 고시 (08.4.23)**	**14차 고시 (09.2.5)**
학사	84	90	94	105	107	107(108)*	108(110)*
전문학사	91	91	92	96	103	108	109
소계	175	181	186	201	210	215(216)	217(219)
구분	**15차 고시 (10.2.26)**	**16차 고시 (10.8.19)**	**17차 고시 (11.3.22)**	**18차 고시 (12.4.20)**	**19차 고시 (13.2.27)**	**20차 고시 (14.5.14)**	**21차 고시 (16.05.12)**
학사	108(110)	108(110)	109(111)	109(111)	109(111)	113(115)	114(116)
전문학사	109	109	109	109	109	110	110
소계	217(219)	217	218(220)	218(220)	218(220)	223(225)	224(226)
구분	**22차 고시 (17.10.1)**	**23차 고시 (18.4.11)**	**24차 고시 (19.5.14)**	**25차 고시 (20.4.7)**	**26차 고시 (21.5.10)**		
학사	115(117)	115(117)	115(117)	116(118)	116(118)		
전문학사	110	110	110	111	111		
소계	225(227)	225(227)	225(227)	227(229)	227(229)		

* 제13차 표준교육과정: 이학사 전자계산학 전공 폐지 고시
*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가정학사 의상학 전공 폐지 고시

〈표 2〉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학사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세부전공	개수
가정학사	식품조리학, (의상학)*	1(2)
간호학사	간호학	1
경영학사	경영학, 무역학, 회계학, e-비즈니스학	4
경제학사	경제학	1
공학사	건축공학, 건축설비학, 게임프로그래밍학, 교통공학, 금속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공학, 기관공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메카트로닉스학, 산업공학, 섬유공학, 소방학, 안전공학, 음향공학, **인공지능**, 자동차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전파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제어계측공학, 조선공학, 컴퓨터공학, 토목공학, 항공정비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30
관광학사	관광경영학, 외식경영학, 호텔경영학	3
광고학사	광고학	1
군사학사	군사행정학, 군수관리학, 지상전학	3
무용학사	무용학	1
문학사	국어국문학, 노년학, 독어독문학, 문예창작학, 불교학, 사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영어영문학, 일어일문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중어중문학, 철학, 청소년학, 프랑스어문학, 한문학	17
문헌정보학사	문헌정보학	1
미술학사	도예, 동양화, 사진학,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학, 실내디자인, 아동미술학, 공예, 화훼조형학, 회화	10
미용학사	미용학	1
법학사	법학	1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방사선학, 안경광학, 의무기록학, 임상병리학, 작업치료학, 치기공학, 치위생학	8
세무학사	세무학	1
수사학사	범죄수사학	1
신학사	가톨릭신학, 신학	2
예술학사	디지털아트학, 모델학, 방송영상학, 연극학, 영화학	5
음악학사	관현악, 교회음악, 국악학, 성악, 실용음악학, 음악학, 작곡, 피아노	8
이학사	대기과학, 생명과학, 수학, 식품생명공학, 원예학, (전자계산학)*	5(6)
지식재산학사	지식재산학	1
체육학사	건강관리학, 경호비서학, 체육학, 태권도학	4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 패션비즈니스학	2
해양학사	항해학	1
행정학사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행정학	3
26개 학위, 116(118)개 전공		

* '전자계산학' 전공은 2011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었고, '의상학' 전공은 2013년 3월 1일부터 폐지되었음.
* 미술학사 '의상디자인' 전공은 2010년 3월 1일부터 패션학사 '패션디자인학'전공으로 학위 및 전공명 변경되었음.
* 제20차 표준교육과정(2015년 3월 1일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노년학', '불교학', '상담학', '지식재산학' 전공 신설.
* 제21차 표준교육과정(2016년 5월 12일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무역학' 전공이 신설.
* 제22차 표준교육과정(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세무학' 전공이 신설.
* 제25차 표준교육과정(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에 의거 학사학위 과정에 '인공지능' 전공이 신설.

〈표 3〉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전공: 전문학사

학위종류	표준교육과정 세부전공	개수
가정전문학사	생활교양, 식공간연출, 식품가공, 식품조리, 아동·가족	5
경영전문학사	경영, 마케팅정보, 무역, 산업·정보시스템경영, 전자상거래	5
공업전문학사	건축, 건축물관리, 게임그래픽, 게임디자인, 금형제작, 기계, 기계설계, 기계재료, 기계전자, 멀티미디어, 방송음향, 비파괴검사, 산업기계정비, 생산기계, **소방안전관리**, 시스템제어, 안전공학, 열기계, 열냉동, 유비쿼터스설비제어, 용접공학, 인터넷정보, 임베디드시스템, 자동제어, 자동차정비, 자동차튜닝, 자동화설비, 전기, 전기공사, 전산응용건축설계, 전산응용기계, 전산응용기계설계, 전자, 전자기기, 정보보호, 정보시스템개발, 신재생에너지, 정보처리, 정보통신, 정보통신설비, 조선, 치공구설계, 컴퓨터그래픽, 컴퓨터네트워크, 토목, 항공정비, 화학공업, 환경관리	48
관광전문학사	관광경영, 관광식음료, 항공서비스, 호텔제과제빵, 호텔조리	5
군사전문학사	군사행정, 군수관리, 지상전, 항공기술, 항공작전, 해상전	6
농업전문학사	관상원예, 농업경영	2
산업예술전문학사	가구디자인, 건축디자인, 광고디자인, 귀금속공예디자인, 도자기공예, 만화예술, 미용, 방송영상, 산업공예, 산업디자인, 세트디자인, 시각디자인, 연극, 영화제작, 인테리어디자인, 전자편집디자인, 컴퓨터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비즈니스	19
언어전문학사	영어, 일본어	2
생명산업전문학사	바이오공학, 애완동물관리	2
예술전문학사	공예, 국악, 기악, 뮤지컬, 미술, 사진, 실용무용, 실용음악, 화예	9
이료전문학사	이료(3년제)	1
행정전문학사	경찰행정, 보건행정, 비서행정, 사회복지	4
체육전문학사	바둑, 레저스포츠, 의전경호	3
13개 학위, 111개 전공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중 3년제 과정은 '이료' 전공만 개설되어 있음. 그 외 전공은 모두 2년제 과정임.
* 제20차 표준교육과정(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의거 전문학사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전공이 신설.
* 제25차 표준교육과정(2020년 4월 7일부터 시행)에 의거 전문학사 과정에 '소방안전관리' 전공이 신설.

〈표 4〉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구분	세부전공	개수
전통공예과	각자, 갓일, 곡성돌실나이, 궁시, 금속활자, 나전, 나주샛골나이, 낙죽, 누비, 단청, 대목, 대발제작, 두석, 망건, 매듭, 명주짜기, 목조각, 바디, 배첩, 백동연죽, 사기, 소목, 소반, 악기, 염색, 옥공예, 옹기, 옻칠정제, 완초, 유기, 윤도, 입사, 자수, 장도, 전통, 제와, 조각, 주철, 채상, 침선, 탕건, 한산모시짜기, 화각	43
전통무예과	택견	1
전통무용과	살풀이춤, 승무, 승전무, 진주검무, 처용무, 태평무, 학연화대합설무	7
전통연희과	가산오광대, 강강술래, 강령탈춤, 강릉단오제, 경기도도당굿, 고성오광대놀이, 광주칠석고싸움놀이, 기지시줄다리기, 남사당놀이, 남해안별신굿, 동래야류, 동해안별신굿, 밀양백중놀이, 발탈, 봉산탈춤, 북청사자놀음, 사직대제, 서울새남굿, 서해안배연신굿 및 대동굿, 석전대제, 송파산대놀이, 수영야류, 안동차전놀이,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영산쇠머리대기, 영산재, 영산줄다리기, 위도띠뱃놀이, 은산별신제, 은율탈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종묘제례, 좌수영어방놀이, 줄타기, 진도다시래기, 진도씻김굿, 통영오광대, 하회별신굿탈놀이, 경산자인단오제, 황해도평산소놀음굿	41
전통음악과	가곡, 가사, 가야금산조 및 병창, 강릉농악, 거문고산조, 경기민요, 고성농요, 구례향제줄풍류, 남도들노래, 대금산조, 대금정악, 서도소리, 선소리산타령, 예천통명농요, 이리농악, 이리향제줄풍류, 임실필봉농악, 제주민요, 종묘제례악, 진주·삼천포농악, 판소리, 평택농악, 피리정악 및 대취타	23
전통조리과	조선왕조궁중음식	1
전통주조과	경주교동법주, 면천두견주, 문배주	3
전통예술학사 전공 119개, 전통예술전문학사 전공 119개		

03 학위수여요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학위수여요건은 〈표 5〉의 일반 학위수여요건과 〈표 7〉의 타전공 학위수여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수여란, 이미 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학위과정입니다.

〈표 5〉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비고
			2년제	3년제	
①	총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공통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
②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③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④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⑤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육과정에서 확인 가능함.				
⑥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⑦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기술계학원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기술계학원]에서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교양 학점 취득기준을 달리 적용합니다.

〈표 6〉 기술계학원에 대한 교양학점 탄력운영제

기술계학원에서 이수한 총 학점		교양학점 최소 이수학점
학 사	8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문학사	65학점 이상(3년제)	15학점 이상
	50학점 이상(2년제)	9학점 이상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중 [기술계학원]은 5개(2021년 5월 기준)

〈표 7〉 타전공 학위수여요건

학사 학위	전문학사 학위	
	2년제	3년제
전공 48학점 이상 이수	전공 36학점 이상 이수	전공 42학점 이상 이수

1. 전공필수요건 포함해야 함.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표준교육과정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반드시 충족해야 함. 전공별 필요한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는 표준교육과정에서 확인
2.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3.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4. 학점취득방법
   ※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5.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하나, 세부적인 학위요건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6.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타전공 학위수여 가능함.
7. 졸업한 전문대학·대학 학점은 타전공 과정에 등록 불가함.
8.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 가능함.(동시 복수의 학위과정/ 전공 진행 불가)

※ 타전공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를 말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점 기준을 충족할 것

가. 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나. 전문학사학위: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36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42학점) 이상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5

5. 법 제9조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위를 받은 자가 학위 수여 이전에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학점은 이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학점인정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제11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용어해설

- **전공:**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또는 학점)인 '전공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진다.
- **교양:**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한다.
- **일반선택:**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과목을 말한다.
- **타전공 학위수여:**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를 타전공 학위수여라 한다.

  (※ 학사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거나, 전문학사학위취득자가 다른 전공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진행하는 경우임)
- **학력인정 각종학교:**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상급 학위과정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로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학교를 학력인정 각종학교라 한다.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단, 그 학위종류나 전공이 해당 대학의 정규과정에 개설되어 있지 않거나 사범계열 등 학점은행제 취지에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해당 대학에서 유사전공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교육과정과 다른 정규교육과정의 학위종류/ 전공 유사성 심의함. 심의결과 학위종류/전공을 학칙에 반영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에게 보고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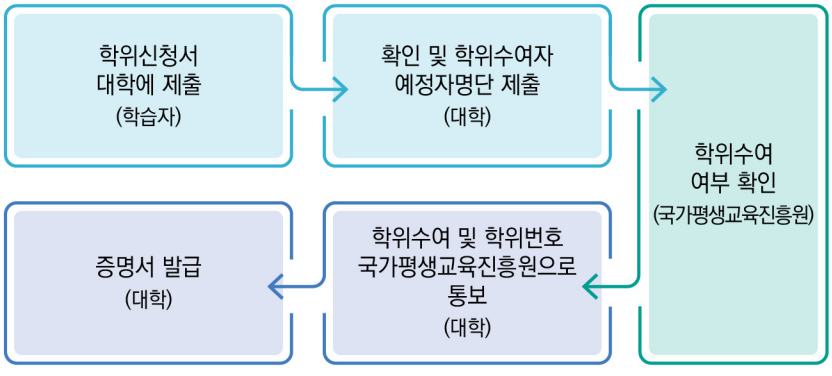

[그림 2]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절차

04 FAQ

Q1. 학점은행제는 어떠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경우 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이미 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 이수가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 등의 시험응시요건 충족을 희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목적을 두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학습자들이 있습니다.

Q2. 전문대학 졸업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받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Q3. 2년제 전문대학 '비서행정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로 비서행정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표준교육과정 고시 전공 중에서 희망전공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에는 비서행정 관련 전공이 없으므로 비서행정 전공 학사학위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Q4.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는 기존에 고시되어 있는 전공 간의 유사 교과목 비율이 높거나, 시대의 흐름 및 학문변화에 따라 전공 고시의 요구가 낮아져 별도의 전공으로 고시할 필요성이 없는 전공에 대해서 전공 폐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학' 전공은 제13차 표준교육과정에서 폐지 전공으로 고시('08.4.23)되어 시행일인 2011년 9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시행일 이전에 전자계산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한 학습자에 한하여 제13차 표준교육과정을 적용하여 학위 취득 시까지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자계산학 전공으로의 신규 학습자등록 및 전공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Q5. 2009년 미술학사-의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여 학점은행제 진행 중입니다. 제14차 표준교육과정에서 의상디자인 전공이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명칭이 변경되면 의상디자인 전공으로 기등록된 학습자 또한 자동으로 전공명이 변경됩니까?

기존에 미술학사로 분류되었던 의상디자인 전공은 제14차 표준교육과정에서 신설된 학위종류

인 패션학사-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14차 표준교육과정 고시 시행 당시 의상디자인 전공으로 등록된 자는 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등록된 자로 보고, 학위 수여 시 패션학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즉 학습자의 경우 패션학사-패션디자인학 전공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Q6. **고등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 6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분야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자는 학점은행제 간호학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 6호

6. 위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중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학습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한 해당 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 참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제11차 표준교육과정에 간호학사와 보건학사가 신규 고시됨.

Q7. **전문대 졸업 후, 학점은행제로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18학점을 표준교육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에 제시된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합니까?**

학위취득 요건 중 '최소 18학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교양이 부족하면 교양 학점을, 전공이 부족하면 전공 학점을, 교양·전공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어떠한 학습구분이든지 상관없이 해당 방법을 통해 학점이수해도 됩니다. 즉, 컴퓨터공학 전공을 한다고 해서 의무 18학점을 컴퓨터공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족한 학점 및 학습구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학습과목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Q8. **4년제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 18학점을 이수할 경우, A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가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와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수여 시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단, 일부 대학에 한해 해당 대학의 학칙에 근거하여 일정 학점 이상을 당해 대학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해당 학교에서 최소 84학점 이상 수업을 이수해야하며 그 외 학칙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할 경우 학위수여 가능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A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9. 타전공으로 경영학 전공의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습자입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과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과목으로 전공필수를 포함한 전공 48학점을 충족할 예정입니다. 의무 18학점은 교양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이수해도 됩니까?

타전공 학사 학위수여요건이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무 18학점 또한 전공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즉 다른 학점취득방법으로 타전공 학위수여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충족하였을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이수를 통해 전공 18학점을 이수해야 타전공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경영학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기 바랍니다.

Q10.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수여를 할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력인정된 대학과정의 각종학교 졸업자 또한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Q11. 4년제 대학을 졸업하여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공인회계사 시험응시를 위해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를 통해 경영학 전공 3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경영학 타전공 학위과정에서 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경영학 전공 3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합니까?

타전공 학위수여는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최종 학위취득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경영학 전공 3과목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2.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 경영학 전공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4년제 재학 시절 물류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격을 학점은행제 학위과정에 학점인정 받을 수 있나요?

학위취득 이전 이수학점은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전에는 자격과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타전공 과정에 등록이 가능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에 의거 모든 학점원이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시행령 시행 전(2015.9.27까지)에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개정 법령에 따라 학점인정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위 학습자의 경우 자격 취득시기에 따라 학점인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13. 학점은행제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 달리 학년의 개념이 없으며, 학점으로 인정되는 학점원도 다양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학습자의 이수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학점은행제 상담서비스(학습설계상담, 방문상담) 이용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문의를 통해 이수계획 및 학위수여요건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참고

Q14.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과 아동학 전공으로 복수전공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복수전공 진행이 가능한가요?

학점은행제는 복수의 전공을 동시에 학습하여 학점인정 및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전공 학위취득을 희망할 시, 모든 학점은 1개의 학위를 취득한 후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1개의 학위과정을 진행하는 동시에 다른 전공으로 학위과정을 추가적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 합니다. 학습자님이 학위취득을 희망하시는 1개의 학위 및 전공으로 학위 취득 후 또 다른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1. 학점의 종류
2. 평가인정학습과정
3. 학점인정대상학교
4. 시간제등록
5. 자격
6.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7. 국가무형문화재
8. 학점인정 주의사항
9. FAQ

Ⅱ
학점의 종류 및 인정기준

01 학점의 종류

학점은행제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업 이수 외의 다양한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학점은행제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그림 3] 학점의 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3. 「고등교육법」 제36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을 마친 자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용어해설

- **평가인정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하는 학습과목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정입니다.
-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합니다.
- **자격:**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하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이 있습니다.
-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사이버대학 포함)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에게 해당 대학의 수업을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독학학위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 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표 8〉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 요약표

구분	학점인정의 기준	인정 학습구분	이수제한학점		중복판단
			연간/학기	1개 기관[1]	
평가인정 학습과정	1. 출석률 80% 이상 및 성적 60점(D°) 이상 또는 PASS인 과목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습구분 인정 나. 전공·교양 호환과목의 경우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교양 또는 전공 학점으로 인정	전필, 전선, 교양, 일선	○	○	○

1)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의미함.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학점인정의 기준</th><th rowspan="2">인정
학습구분</th><th colspan="2">이수제한학점</th><th rowspan="2">중복판단</th></tr>
<tr><th>연간/학기</th><th>1개 기관[1)]</th></tr>
<tr><td>학점인정
대상학교</td><td>1. 전문대학은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제적한 4년제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2.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3. 학점인정대상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 인정불가
4. 학습구분 결정 기준
가.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해당학교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나.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td><td rowspan="2">전필, 전선,
교양, 일선</td><td>○
(32~33
페이지
참고)</td><td>×</td><td>○</td></tr>
<tr><td>시간제등록</td><td>1. 성적이 60점 또는 D- 이상인 학습과목 인정(성적과 관계없이 F학점은 불인정)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자와 동일</td><td>○</td><td>×</td><td>○</td></tr>
<tr><td>자격</td><td>1.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인정(단,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1개만 인정
3. 학습구분 결정 기준:
「자격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전공연계 자격은 전필,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선</td><td>전필, 일선</td><td>×</td><td>×</td><td>×</td></tr>
<tr><td>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
과정</td><td>1. 과정별 인정 학점
<table>
<tr><th>과정</th><th>구분</th><th>인정학점</th></tr>
<tr><td>1</td><td>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td><td>과목당 4학점
(최대 20학점)</td></tr>
<tr><td>2</td><td>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td><td rowspan="3">과목당 5학점
(최대 30학점)</td></tr>
<tr><td>3</td><td>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 및
면제교육과정 이수</td></tr>
<tr><td>4</td><td>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td></tr>
</table>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1과정은 교양, 2~4과정은 분과위원회 심의</td><td>전필, 전선,
교양, 일선</td><td colspan="2">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에 한하여 적용</td><td>○</td></tr>
<tr><td>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
일정한
전수교육
이수</td><td>1. 등급별 인정 학점
<table>
<tr><th colspan="2">등급</th><th>학점</th></tr>
<tr><td colspan="2">보유자</td><td>140학점</td></tr>
<tr><td colspan="2">전승교육사</td><td>50학점</td></tr>
<tr><td colspan="2">이수자</td><td>30학점</td></tr>
<tr><td rowspan="4">전수생</td><td>3년 이상</td><td>21학점</td></tr>
<tr><td>2년 이상</td><td>14학점</td></tr>
<tr><td>1년 이상</td><td>7학점</td></tr>
<tr><td>6개월 이상</td><td>4학점</td></tr>
</table>
2. 학습구분 결정 기준:
표준교육과정 전공과 동일한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전필, 동일하지 않은 전수교육을 받은 경우 일선</td><td>전필, 일선</td><td>×</td><td>×</td><td>×</td></tr>
</table>

02 평가인정학습과정

'평가인정학습과정'은 수업 환경(시설·강사요건·운영실적 등)이 일정기준 이상임을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교육기관(대학 또는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각종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개설한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학에 상응하는 질적 수준을 갖추었는가를 법령에 따라 평가받은 과목으로, 이수 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의 기준

1. 100점 만점에 60점(D°) 이상 또는 PASS 취득, 출석률 80% 이상인 학습과목에 한해 인정 (단,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목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이어야만 학점인정 가능함)
   ※ 대학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에서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의 경우 소속대학의 학칙에 따라 별도적용
   ※ 2005년 10월 27일 이전에 종강한 학습과정은 성적 70점 이상, 출석률 80% 이상 기준 적용
2.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3.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적용 (34~35페이지 참조)

▸ 학습구분 결정기준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중 하나의 학습구분으로 결정(단, 전공·교양호환과목은 전공에 따라 전공(전공필수/전공선택) 또는 교양으로 인정)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확인방법

2021년 5월 기준으로 평가인정학습과정이 개설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총 428개입니다. 이 중,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원격교육기관은 총 85개이고, 나머지 기관은 출석하여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입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검색: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

✔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운영 제반사항(이수기간, 수강비용 등)은 각 기관의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수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문의

[그림 4]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조회 화면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기존에 운영중인 K-MOOC 강좌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승인 받은 강좌로 본 강좌를 이수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로 학점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K-MOOC란 온라인을 통해서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로 한국형 무크입니다.

⇨ 수강료(학습비): 무료 (2021. 5월 현재)

⇨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은 학기당 최대 24학점, 년간 42학점까지 수강 신청 가능

※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한 강좌에 대해서는 수강취소가 될 수 있음

◇ **K-MOOC 학점은행제 학습과정 확인방법**

⇨ K-MOOC 홈페이지(www.kmooc.kr)- 강좌찾기 - 학점은행과정

⇨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간, 학점은행과정- 강좌찾기 - 강좌 소개페이지의 [수강신청]에서 가능

※ 수강신청 기간은 대학별, 강좌별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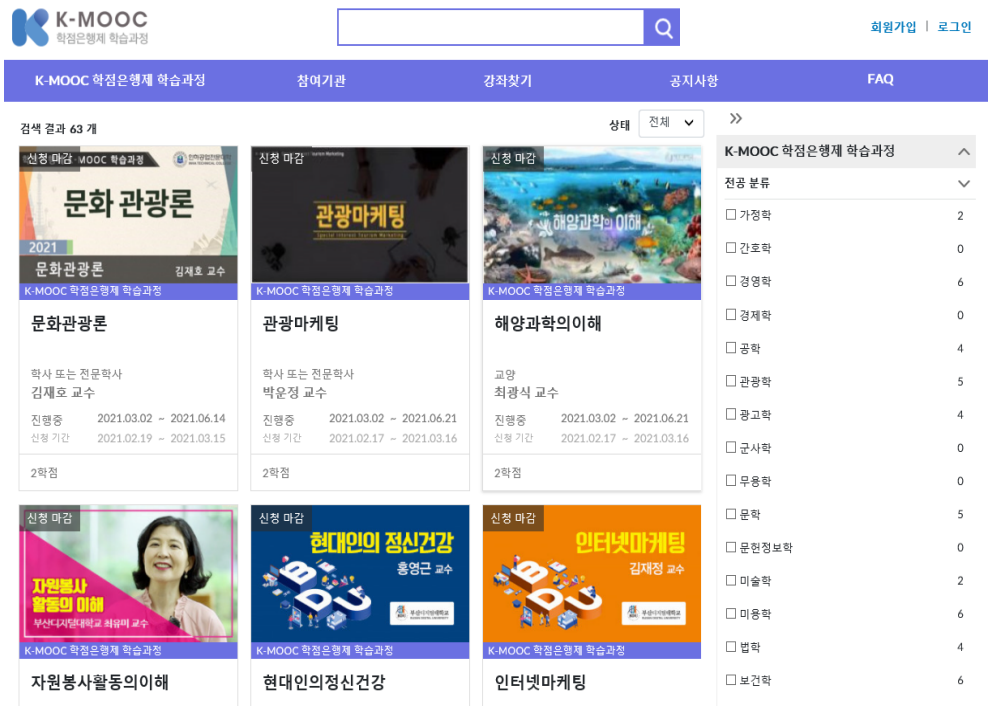

03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학)'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 등으로,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 또는 졸업(전문대학)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졸업한 4년제 대학교 학점은 인정불가)

▸ 학점인정대상학교 종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참고)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2. 대학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학교

3. 다음의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 및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다기능기술자과정으로 한정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의 기준

1.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8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2. 대학의 경우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단, 제적한 학점에 한하며, 졸업시 인정 불가)
3. 성적기준: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
4.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휴학 포함) 중인 경우, 해당 대학 학점인정 불가(제적 이후 가능)
5.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학기 중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등)을 동시에 이수하거나, 학점인정대상학교 제적 후 같은 해(또는 학기)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학기당 최대 이수학점 기준 적용
6.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 **학습구분 결정기준**

1.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제적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을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2.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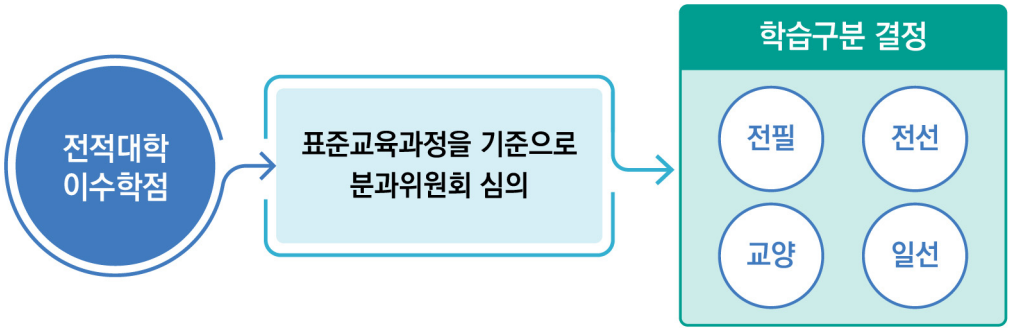

[그림 5]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 기준

04 시간제등록

'시간제등록'이란 고등교육법 제3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에 따라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 포함),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대학재적(재학)생 이외 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일반인에게 대학의 개설교과목을 시간제로 등록하여 이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사항은 시간제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6조

①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은 제33조제1항의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그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간제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선발방법과 등록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사내대학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해당 사내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방법은 학칙으로 정하되,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시간제등록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으며, 그 등록인원은 해당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시간제로 등록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학점인정의 기준

1. 성적기준: 60점 또는 D- 이상
   ※ P(pass)의 경우, 학점부여시 인정가능. F(fail)는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불가
2. 시간제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9항)
   나.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제57조제2항)
   ※ 단,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
3.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
4.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 학습구분 결정기준: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

1.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
   예) 4년제 대학 영어영문학과 시간제등록 이수 후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영어영문학 전공 희망할 경우, 대학의 학습구분대로 학점인정 가능
2.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단,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

〈표 9〉 2021년도 고등교육법에 의한 사이버대학 현황

(학사 17개교, 전문학사 2개교)

구분	대학명	비고
학사과정	건양사이버대학교	
	경희사이버대학교	
	고려사이버대학교	한국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0)
	국제사이버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대구사이버대학교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08)
	부산디지털대학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디지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숭실사이버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2)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열린사이버대학교에서 교명 변경('16)
	원광디지털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화신사이버대학교	아시아태평양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09)
전문학사과정	영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	

〈표 10〉 2021년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현황

(학사 1개교, 전문학사 1개교)

구분	대학명	비고
학사과정	영남사이버대학교	세민디지털대학교에서 교명 변경 및 학제 전환 (2년제→4년제)('03)
전문학사과정	세계사이버대학	

05 자격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대상 자격의 선정기준, 각 자격별 인정학점, 자격과 표준교육과정 연계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제23차 자격학점인정기준 고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의 기준

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가. 학사는 최대 3개, 전문학사는 최대 2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단,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사, 전문학사 모두 최대 1개까지 학점인정 가능함.)

나. 최대 인정 가능 자격 범위 내에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1개까지 인정 가능함.

〈표 11〉 학위종류별 자격 학점인정 기준

전문학사	학사	비고
2개	3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타전공 학위과정 시 전문학사, 학사 모두 1개		

2.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최대 1개 인정

가. 학점은행제 인정 자격은 대분류로 분야별 자격 범위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유사 자격 간에 직무별로 각각 중분류-직무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함.

나. 동일직무란 대분류-중분류-직무번호가 동일한 것을 말하며, 동일직무 내에 속한 자격은 여러 개를 취득하여도 선택하는 1개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가능함.

3. 자격인정학점 (※ 2009년 3월 1일 이후 취득자)

가. 국가기술자격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을 국가기술자격이라 하며, 다음의 〈표 12〉의 산출 근거에 따라 인정함.

〈표 12〉 국가기술자격의 학점인정 산출기준

구분	학점	학점인정 산출근거	
기술사	45	필기시험	5과목(평균)×3학점 = 15학점
		실기시험	15학점
		현장경력	5년×3학점 = 15학점
기능장	3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20학점
기사	20	필기시험	5과목(평균)×2학점 = 10학점
		실기시험	10학점
산업기사	16	필기시험	4과목(평균)×2학점 = 8학점
		실기시험	8학점

※ 국가기술자격 학점인정 기본틀은 「자격 학점인정 기준 개선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7)」에서 제시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을 적용하며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위의 기본틀 시행 이전인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기술사 45학점, 기능장 39학점, 기사 30학점, 산업기사 24학점**으로 인정함.

※ 기능사는 대학 수준에 준하지 않아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에서 제외됨. 단, 1999년 이전에 취득한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는 현재 산업기사로 통합되었으므로 인정 가능함.

나.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1) 주로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인 국가기술자격 이외에 각 부처별로 개별 법령에 의해 독립적으로 신설, 운영되는 자격으로 정부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음.

2)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 간에는 통합된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자격취득의 난이도가 유사한 자격들을 집단으로 묶고, 학력 수준을 기준으로 차별화하여 등급을 설정한 후 각 등급에 부여되는 총 인정학점을 다음의 〈표 13〉과 같이 결정함.

〈표 13〉 학점은행제 자격 등급 체계

등급	인정학점	인정 학력 수준
1	45(45)	대학원 석사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2	37(42)	
3	30(39)	대학원 석사 졸업(예정자 포함)
4	25(34)	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5	20(30)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6	18(27)	전문대학 졸업 후 현장 경력 요구
7	16(24)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8	14(18)	
9	10(12)	전문대학 1년 수료자
10	8(9)	
11	6(8)	
12	5(6)	
13	4(4)	
14	3(3)	
15	2(2)	

※ 인정학점 괄호 안은 2009년 3월 1일 이전 취득한 자격에 대한 인정학점임.

다. 국가공인 민간자격

1)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민간자격 중 검정기준·검정과목·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것을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 함.

2)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은행제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국가자격 학점 산출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해당 자격의 공인유효기간 내(재공인 포함)에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함.

▸ 학습구분 결정기준

1. 전공 연계 자격: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자격의 시험과목과 표준교육과정 전공별 학습과목이 유사하거나, 자격 취득을 통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해당 전공의 학습과목을 이수한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격과 전공을 연계함.

2. 전공 연계 외의 자격: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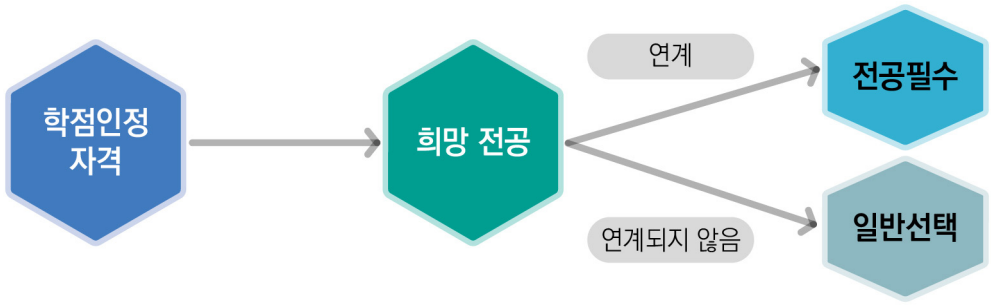

[그림 6] 자격 학습구분 결정 기준

〈표 1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격명칭 변경

자격 취득 시기		학점 인정 여부
98년도 이전	98년도 이후	
기사1급	기사	인정
기사2급 기능사1급 다기능기술자	산업기사	
기능사2급	기능사	불인정
기능사보	폐지	

2009년 3월 이전 취득한 동일 등급의 자격을 여러 개 학점인정 받을 경우, 자격별 공통(중복) 시험과목에 대하여 감산이 적용

〈표 15〉 자격등급별 공통시험과목 감산기준

등급	인정학점	감산기준
1	45	과목당 3학점씩 감산
2	42	
3	39	
4	34	
5	30	
6	27	
7	24	과목당 2학점씩 감산
8	18	
9	12	
10	9	
11	8	
12	6	
13	4	
14	3	
15	2	

※ 단, 2009년 2월 취득 자격까지 적용

예시) 정보처리산업기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 간 공통시험과목 1과목(정보통신개론)에 대하여 2학점 감산, 따라서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사무자동화산업기사 22학점 인정

구분	시험과목
정보처리산업기사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 약사, 한의사 등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 안마사 등
③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 - 보육교사, 사회복지사2급, 평생교육사 등
④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 정교사 등
⑤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 산림토목기술자 등
⑥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⑦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국내여행안내원 등
⑧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등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 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자격

❖ **자격 학점인정기준 확인하기**

자격 학점인정기준은 매년 고시되므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되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학점은행제소개→학점인정대상→자격] 또는 [알림마당→자료실-자격 학점인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6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검정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bdes.nile.or.kr

▸ 전공분야

- 국어국문학
- 영어영문학
- 경영학
- 법학
- 행정학
- 유아교육학*
- 가정학
- 컴퓨터과학
- 간호학*
- 심리학*
- 정보통신학*

※ 유아교육학, 정보통신학: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간호학: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만 지원 가능

※ 심리학: 2014년부터 개설 운영

▸ 과정별 시험

가.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대학의 교양과정을 이수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학력 수준을 평가한다.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각 전공영역의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 학문 계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각 전공영역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전문지식과 기술을 평가한다.

라.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시험의 최종과정으로써 학위를 취득한 자가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 및 전문지식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학점인정의 기준

1. 시험 합격 또는 시험 면제교육과정 이수과목에 대하여 〈표 16〉 학점으로 인정

〈표 16〉 독학학위제 과정별 인정 학점

과정	인정학점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과목당 4학점 (과정별 최대 20학점 인정)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과목당 5학점 (과정별 최대 30학점 인정)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2.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경우 과정별 학습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불가
3.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학습과목에 한하여 1년/1학기 최대 인정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적용
4.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34~35페이지 참조)
   ※ 단,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음.

▸ 학습구분 결정기준

1. 1과정(교양과정인정시험): 교양으로 인정
   ※ 단, 학점은행제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전공필수 또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예)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경영학개론]합격 시 전공필수 또는 교양으로 인정
2. 2~4과정: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

〈표 17〉 독학학위제 과정별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년원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학위취득 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전공과 동일전공인정 학과에 한함)	•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면제)한 사람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학교와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학력인정학교로 지정된 학교만 해당한다)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응시 불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 •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표 18〉 학점은행제 교양으로 인정 가능한 독학학위제 학습과목

과정		교양 인정 가능 과목
교양과정인정시험(1과정)		전 과목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2과정)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심리학	상담심리학, 산업및조직심리학
	행정학	정치학개론
	가정학	가정관리론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3과정)	유아교육학	부모교육론
	가정학	가족관계, 식생활과건강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컴퓨터그래픽스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	교양 선택 과목	국어, 국사, 외국어
	국어국문학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영어영문학	영어학개론

07 국가무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분야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 사항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시·도 지정 문화재 제외)보유자 및 그 전수교육을 받은 전수교육경험을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점인정의 기준

〈표 19〉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등급		학점	비고
보유자		140학점	단, 전수교육 조교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음.
전승교육사 *		50학점	
이수자		30학점	
전수생	3년 이상	21학점	
	2년 이상	14학점	
	1년 이상	7학점	
	6개월 이상	4학점	

~1999.7.19		1999.7.20~2001.9.7		2001.9.8~현재	
등급	학점	등급	학점	등급	학점
보유자후보	60	전수교육 보조자	50	전승 교육사	50
전승교육사	53				
전수교육보조자	50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전승교육사'의 명칭이 변경되었기에, 세부 인정기준은 홈페이지 참조

1. 고등학교 졸업(또는 이와 동등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아 학점인정과 동시에 학사학위 취득 가능함.
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기간에 따른 학점을 인정하고 있음.
   ※ 단,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전수생에 대해 문화재청에 보고하거나 등록 장부를 만들어 전수생을 관리한 경우에 한해 학점 인정 가능 (일반회원의 자격으로 전수받은 경험은 학점 불인정).
3.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서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자의 기능이나 예능을 심사하여 그 기능이나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함. ('이수자'에 해당)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기 위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자 중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로 선정함.

▸ 학습구분 결정기준

1.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한 전공을 선택할 경우: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
2. 전수교육 경험과 동일하지 않은 전공을 선택할 경우: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은 119개 전공으로 학사, 전문학사 과정이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음. 따라서 희망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학습하되, 학위종류(전문학사 또는 학사)에 맞추어 학위요건을 충족해야 함.
   ※ 현재 제10차 국가무형문화재 표준교육과정 적용(2017.10.1고시 / 2017.10.1 시행)

08 학점인정 주의사항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업으로 이수한 학점 중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년에 최대 42학점이며, 한 학기 최대 24학점까지입니다.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제한

연간 이수 제한학점	학기당 이수 제한학점
42학점	24학점

⇨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는 그림과 같이 수업을 통한 학점원은 포함되지만, 수업 이외의 학점원은 포함되지 않음.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은 해당 학교와 동일한 연도/학기에 타 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한해, 1년/1학기 제한학점 기준을 적용 받음.

[그림 7] 1년/1학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에 포함되는 학점원

⇨ 1년은 당해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를 의미하고,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구분, 이는 수업이 끝나는 날(종강일)을 기준으로 함.

[그림 8] 학기의 구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비고1

1. 위 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학점인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없다.
   가.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42학점
   나. 학습과정별 종료일 기준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의 학점: 각각 24학점

⇨ 단,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는 아래와 같이 적용

〈표 20〉 학위수여예정자의 마지막 학기 구분

구분	마지막 학기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	9월 1일 ~ 다음해 1월 15일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	3월 1일 ~ 7월 15일

즉,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1월 15일까지,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7월 15일까지 이수(취득)가 완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해당 학위에 인정 가능함.

예) 2021년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가 2021년 1월 16일 이후 취득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 받을 수 없음.

▸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평가인정학습과정] 및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학점은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표 21〉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구분	최대 인정 학점
학사학위 과정	105학점
전문학사학위 과정	60학점(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90학점)

※ 단,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 중「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전공과는 전문학사 과정에서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 제한을 받지 않음.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 청암예술학교(2021년 5월 기준)

▸ 중복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1과목만 인정)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대상학교],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이수한 과목 중 중복과목이 있을 경우, 1개 과목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표 22〉 중복과목 예시

구분	중복과목 판단의 기준	예시
1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 (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	영어 = 영어 ENGLISH = English
2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회계 입문 = 회계입문 인터넷의 이해 = 인터넷 이해
3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S/W 활용 = SW활용 EDPS = E.D.P.S 한국 근·현대사 = 한국근현대사 가족상담 및 치료 = 가족상담·치료
4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전공실기 = 전공실기1 = 전공실기 Ⅰ
5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 = C/S 프로그래밍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PS 콘크리트

▸ 대체과목 판단 및 처리기준(각각 인정)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필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구분은 하나의 과목만 전공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표 23〉 대체과목 예시

구분	예시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이해 ≒ ~개론 ≒ ~입문 ≒ ~총론 ≒ ~원론 • ~실험 ≒ ~실습 • ~연구 ≒ ~탐구 • 컴퓨터~ ≒ PC~ • 전자상거래 ≒ E-BUSINESS • 스포츠~ ≒ 운동~ ≒ 체육~ • 글로벌~ ≒ 국제 ~ ≒ 세계~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도서관학개론 ≒ 문헌정보학개론 • 전산기 ≒ 컴퓨터

※ 주의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관련 법·규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등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간호·보건계열 전공과목은 별도 기준이 적용됨.
-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 (홈페이지 → 알림마당→ 공지사항 → 각종 고시·규정개정 →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 기준' 참고)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연계 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2년제)를 취득한 자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최대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함.
  예) 81학점으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1학점 해당하는 학습과목 제외 또는 선택한 학습과목의 1학점 절사
  ※ 단,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의 경우 학점 절사 불가함.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학위연계 시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고, 다른 학위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은 [자격],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 학점은 학사학위연계 시 인정 가능함.
  ※ [학점인정대상학교]의 경우, 전문학사과정에서 모두 인정받지 않은 경우 학점인정 가능(일부 인정받은 경우 인정 불가)

▸ 대학 재적(재학, 휴학)생의 학점은행제 이용 주의사항

대학(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에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나, 이후 해당 대학 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거나 학점은행제로 학위취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아래의 학습자가 대학 이수학점과 타학점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을 모두 학점은행제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1년 42학점, 1학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됨.

- 전문대학, 대학 재적(재학, 휴학)학기 중 타학점원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중퇴 후 중퇴한 연도에 타학점원을 이수한 경우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인 자는 해당 대학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고, 대학 중퇴 또는 졸업 시에만 인정이 가능함(단, 졸업한 4년제 대학 이수학점은 인정되지 않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 타전공 학위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타전공 학위과정에서는 학위취득 후에 이수한 학점만 인정가능하므로, 전문대학·대학 졸업 이전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대학, 대학 재적 중 학점은행제 학점을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은 타전공 과정이 아닌 일반 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진행 시 인정 가능함.

09 FAQ

Q1. 교양학점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표준교육과정-전공교양호환과목을 이수해도 됩니까?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자의 희망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양학점이 부족할 경우 표준교육과정-전공교양호환과목을 이수해도 됩니다. 참고로 이 때 전공으로 인정 가능하다는 의미는 모든 전공에서가 아니라, 해당 과목이 표준교육과정 상 전공과목으로 고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경영학개론]은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가 희망에 따라 전공필수 또는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방송영상학 전공의 학습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교양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Q2. 학점은행제 섬유공학 전공을 하고자 하는데, 섬유공학 전공 과목을 개설한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고시된 전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한 곳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섬유공학 전공은 전공과목 이수에 대한 수요가 적어 해당 전공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정은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평가성격이며, 과목이수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 부족 등 교육여건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과목 개설 권장 외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을 통한 평가인정학습과정 여건이 어렵다면, 섬유공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의 시간제등록을 통해 과목 이수, 전공연계 자격 취득 등으로 전공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과정원에 따른 입학, 정해진 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일정기간 후 졸업하는

대학과 달리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습자의 전공선택 인원 제한 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공 및 과목에 따른 학습자 수요가 일정할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 **3년제 전문대학에서 123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전문대학 학점을 인정받을 때 123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 최대 120학점(수업연한이 2년인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셨다면, 최대 120학점까지 인정 가능하나 학습자 선택으로 과목 제외 또는 학점 절사방식으로 초과하는 3학점 이상을 제외해야 합니다.

Q4.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현장실습] 과목이 학점은 2학점, 성적은 'P'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패스(PASS)학점이란, 일반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지 않고 과목 이수결과를 'PASS/NO PASS' 등으로 표기하는 학점으로 P로 표시되는 학점 뿐 아니라 S등 정상적인 성적표기가 되지 않는 학점 전체를 말합니다.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패스학점 중 해당대학의 인정기준에 충족될 경우(총 취득학점에 포함될 경우) 성적부여에 관계없이 학점으로 인정합니다. 단, 학점이 0이거나 기재되지 않는 패스학점은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Q5. **전문대학 휴학 중입니다.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이 때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인정 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재적 중인 자는 해당 학교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휴학 또한 '재적 중인 자'에 포함되므로, 휴학 상태에서는 해당 전문대학 이수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를 제적 또는 졸업한 이후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Q6. **전문대학 재학 중 교양과목으로 [대학생활]이라는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과정 시 [대학생활] 과목은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인정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교양으로 이수하고, 성적증명서에 학습구분이 교양으로 표기된 경우, 해당 과목은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습자가 이수한 [대학생활]은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7. **전문대학 재학 중 전공선택 과목으로 [영어회화1]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진행시, [영어회화1]을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표준교육과정의 교양과목과 과목명이 동일한 과목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영어회화1]

은 표준교육과정 상에 교양과목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전문대학 재학 중에 이수한 [영어회화 1]도 교양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8. **컴퓨터공학 전공의 4년제 대학 재학 중 전공필수과목으로 [C언어]를 이수하고, 제적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C언어]는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인정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의 학위과정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과 동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학교의 학습구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에서 전공필수로 이수한 [C언어]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 컴퓨터공학 전공에서도 전공필수로 인정됩니다.

Q9. **2년제 전문대를 2곳 졸업한 학습자입니다. 2년제에서 이수한 과목은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된다고 한다면 2곳을 합산하여 80학점까지만 인정됩니까?**

2년제 전문대에서 이수한 학점을 학점은행제 학사과정에 등록할 경우 최대 8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2년제를 2곳 졸업하셨다면, 각 학교별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복과목이 없을 경우 최대 160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습구분은 학점은행제 희망 전공에 따라 변동될 것입니다.

Q10.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컴퓨터공학 전공과목을 시간제등록에 의해 이수하고자 하는데, 시간제등록 가능한 대학의 목록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등록인원 등은 각 대학의 학칙으로 정하므로 시간제등록의 시행여부, 개설과목, 수강비용 등의 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과 평가인정학습과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시간제등록생 모집 대학 및 개설과목 등은 안내되어 있지 않으니 시간제등록을 희망하는 각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대학 종합정보 : www.cuinfo.net 참고

Q11. **2021년 1학기 현재, 교육기관에서 12학점, 시간제등록으로 12학점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니, 「현재 수강 중인 학점」 메뉴에 교육기관에서 이수하고 있는 과목만 확인됩니다. 시간제등록 학습과목은 확인할 수 없습니까?**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현재 수강 중인 학점] 메뉴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정학습과정은 각 교육기관에서 수강생 정보에 대한 운영현황보고(사전보고)를 하므로 [현재 수강 중인 학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시간제등록은 각 대학 학칙에 의해 수강생을 모집하므로 대학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

로 보고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간제등록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현재 수강 중인 학점]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과목 이수 후 각 대학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Q12. 학점은행제 보건학사 물리치료학 전공 학습자입니다. 전공필수 학습과목을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까?

시간제등록생 선발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할 수 있으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라 교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 및 한약사, 수의사 등과 관련된 모집단위는 제외합니다. 즉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세부 전공의 학습자는 전공 학점을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할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 간호학사 및 보건학사 전공 학습과목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Q13.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 시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법에 의한 기타 국가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대학의 학점과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는 수준을 지닌 자격에 대하여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4.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됩니까?

취득한 자격과 학점은행제 희망전공 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연계된 자격은 전공필수 학점으로,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15. 전공필수만 6학점 부족한 상황에서,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를 학점인정신청 할 때, 6학점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취득한 자격증은 해당 자격증에 부여된 학점 그대로 학점인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 학점을 필요한 학점으로 나누어 학점인정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16.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 타전공 학사학위과정을 할 때 2개 자격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타전공 학위과정 시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자격 중 학습자가 원하는 하나의 자격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Q17. 기계공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생산기계산업기사와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를 각각 2003년도에 취득하였습니다. 두 개 자격증 모두 학점인정이 가능합니까?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자격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갱신된 하나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생산기계산업기사와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는 통합되어 현재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자격을 기존에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학점인정은 통합된 자격인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에 해당하는 학점만 인정 가능합니다.

※ 변동사항(명칭변경, 통·폐합 등)이 있는 자격은 시행 부처에서 발급하는 개정 변경된 자격 취득을 재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학점인정이 가능함.

Q18. 미술학사 도예전공의 학습자입니다. 도자기공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됩니까?

도자기공예산업기사 자격은 도예 전공과 연계된 자격이었습니다. 다만, 이 자격은 저조한 응시율 등을 이유로 2005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기 이전에 해당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도예 전공에서 전공필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005년 1월 이후 도자기공예산업기사 자격은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도예 전공 학습자의 경우 전공필수 과목은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등의 수업을 통해 이수해야 합니다.

Q19.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은 무엇입니까?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 독학학위제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 해당 대학 등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험면제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독학학위제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는 것으로 1과정~3과정 시험과목에 한하여 면제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합니다.

단, 시험면제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1년/1학기 최대 이수학점, 1개 교육기관 최대 인정학점을 적용하므로 학점 이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20. 학점은행제 관광경영학 전공 학습자입니다. 독학학위제에는 관광경영학 전공이 없으니, 관광경영학 전공의 학습자는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없습니까?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면제교육과정 이수 시 1과정은 교양 학습구분으로 인정되고, 2~4과정은 희망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의해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독학학위제 전공분야에 관광경영학 전공은 없으므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전공 학점을 취득할 수는 없지만, 교양이나 일반선택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Q21. 독학학위제 3과정 [마케팅원론], 4과정 학위취득종합시험 [마케팅원론] 과목을 시험 합격하였을 경우 두 과목 모두 인정 가능합니까?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종합시험(4과정)과 1~3과정 과목 간에는 중복을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3과정 [마케팅원론], 4과정 [마케팅원론] 과목 모두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Q22. 독학학위제 1과정 시험과목에 필수과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국민윤리]와 [사회학개론] 과목만 응시하고자 합니다. 1과정 시험 중 필수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합니까?

독학학위제에서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을 위해 4과정 시험 전까지 합격해야 하는 필수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일부과목만 응시하여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필수 과목을 반드시 응시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과목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습니다.

Q23. 독학학위제 시험합격과목의 성적은 어떻게 기재됩니까?

독학학위제 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하므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에도 합격과목에 대한 성적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점인정 시에도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 점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Q24. 2020년 8월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2021년 1분기에 경영학 전공 학사-타전공으로 학위연계를 했습니다. 2019년에 독학사 2과정 [회계원리] 시험 합격 후 학점인정을 받지 않았는데,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에서 [회계원리] 독학사 시험합격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5.9.28 시행)으로 타전공 학위과정 진행시, 모든 학점원은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이전인 2019년에 합격한 [회계원리] 과목은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Q25.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소지한 국가무형문화재 101호 금속활자장 보유자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후 학점인정신청 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몇 학점 인정됩니까?

고졸 학력 이상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4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추가적인 학점 이수 없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습자의 경우 국가무형문화재 학사과정 전통공예과 금속활자 전공으로 학습자등록 및 보유자 학점에 대한 인정신청을 하면 학점은행제 전통예술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학위수여는 정해진 기간인 2월, 8월에만 가능합니다.)

Q26. 학점은행 연극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고성오광대보존회에서 전수생으로 2002년 8월 20일~2005년 12월 30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7호 고성오광대 전수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점인정 신청 시 어떠한 학습구분으로 몇 학점 인정됩니까?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경험인 '고성오광대'와 희망전공 연극학은 동일하지 않으므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며, 2002년 8월 20일~2005년 12월 30일까지 3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았으므로 21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즉 일반선택 21학점으로 인정됩니다.

Q27. 2020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2021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 1과목(3학점)을 추가 이수하였는데 모두 학점인정 가능합니까?

1년은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말하며, 학기는 종강일을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1학기,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2학기로 구분합니다. 추가 이수하고자 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의 종강일이 2021년 2월 10일이라면 이 과목 또한 2020년 2학기 학습과목입니다. 학기당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이 24학점이므로 2020년 2학기에 시간제등록을 통해 24학점을 이수한 학습자가 2021년 2월 10일 종강하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추가 이수할 경우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 초과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학기당 최대 인정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선택에 의해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신청기간을 달리하여 접수하여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8. 2021년 7월 26일 종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될 경우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가 가능합니까?

학위수여예정자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에서부터 학점인정, 학위수여요건 심사 등 제반 학위수여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전기 1월 15일, 후기 7월 15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기간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는 학점에 한하여 인정하고 학위수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를 하려면 2021년 7월 15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학습자와 같이 학위신청 마감일 후인 7월 26일 종강하는 과목을 포함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후기 학위수여는 불가합니다.

Q29.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교육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취득에 필요한 80학점을 모두 이수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평가인정학습과정과 독학학위제 면제교육과정 이수를 할 경우,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 과정의 경우, 1개 교육기관에서 최대 6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A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60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20학점은 다른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Q30. 전문학사 미용 전공의 학습자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암예술학교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 69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모두 인정 가능합니까?

청암예술학교는 고등기술학교로 분류된 교육기관입니다. 고등기술학교는 1개 교육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69학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전문학사 과정에만 해당됩니다.

Q31.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을 진행하고자 100학점을 이수하였습니다. 사정에 의해 학사학위가 아닌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전문학사학위로 변경할 경우 100학점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과정에서는 1개 교육기관 이수학점 중 최대 105학점까지 인정되지만, 전문학사학위 과정에서는 최대 60학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희망학위를 변경할 경우 B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수한 100학점 중 최대 60학점에 대해서만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Q32. 현재 학점은행제로 '학사' 전공을 진행중입니다. 현재까지 인정받은 학점이 전공 86(전공필수 모두 포함), 교양 39, 일반 15학점입니다. 이 중 전공필수, 전공 60이상, 교양 30 이상의 학위요건은 충족하였는데, 일반선택도 50학점 채워야 하나요?

전공요건, 교양요건과 달리 일반선택 학점은 반드시 일정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요건은 없습니다. 학습자님의 경우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140학점 이상 충족하였기에 일반선택 학점과 상관없이 필요한 총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입니다. 간혹 전공과 교양을 제외한 학점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잘못 이해하고, 일반선택 학점이 부족하다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요건과 교양요건을 제외한 학점(전문학사 20학점, 학사 50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이수해도 되지만, 꼭 일반선택으로만 이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기준보다 초과하여 이수 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전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초과한만큼 총학점에서 부족한 일반선택(또는 학습구분 관계없이) 학점을 적게 수강해도 가능합니다.

Q3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시절 취득한 자격증이 있는데, 해당 자격을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과정 학점으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학점은행제 모든 학점원의 학점인정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서 학점인정 신청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에 한정하여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Ⅲ

각종 신청 방법

1. 학습자등록신청
2. 학점인정신청
3. 학위신청
4. FAQ

Ⅲ
각종 신청 방법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등록신청을 비롯하여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 등 각종 신청절차를 정해진 기간 중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구분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절차와 함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내용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표 24〉 학점은행제 신청의 종류

구분	내용
학습자등록신청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 •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 가능 • **학위신청과 동시에 학습자등록 불가 (학위신청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 신청이 완료되어야 함)**
학점인정신청	• 학점은행제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이수, 자격취득 등을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 학위수여 이전에 학위과정/전공을 다른 학위과정/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신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자가 다른 학위과정/전공을 추가로 학습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절차
재심신청	•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신청	•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에 대하여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기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의 학습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학위신청	• 희망 학위과정/전공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충족하여 학위를 수여받고자 신청하는 절차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학위연계 신청 대상자는 해당 변경처리가 완료된 후 학점인정신청 가능함.

〈표 25〉 신청 내용별 제출서류 및 수수료

<table>
<tr><th rowspan="2">번호</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제출서류</th><th rowspan="2">수수료</th></tr>
<tr><th>방문 접수</th><th>온라인 접수</th></tr>
<tr><td>1</td><td>학습자등록 신청
(고졸 이상)</td><td>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td><td>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최종학력증명서(온라인 첨부서비스
이용자는 서류제출 면제)1부</td><td>4,000원</td></tr>
<tr><td colspan="3">※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는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 및 외국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함.
※ 아동학(아동·가족)전공 유사과목에 해당되는 경우,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을 제출 해야 함.</td></tr>
<tr><td>2</td><td>학점인정 신청</td><td>학점인정신청서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1부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td><td>학점인정신청서 출력본 1부
학점원별 별지서식 출력본 1부
학점 취득 증빙서류 1부</td><td>1학점 당
1,000원</td></tr>
<tr><td colspan="3">※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자격을 포함한 일부 자격 온라인 신청 가능함.
※ 국가무형문화재 온라인 신청 가능</td></tr>
<tr><td>3</td><td>학습자등록 및 학점
인정 취소 신청</td><td>불가</td><td>가능
(제출서류 없음)</td><td rowspan="6">없음</td></tr>
<tr><td>4</td><td>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td><td>불가</td><td>가능
(제출서류 없음)</td></tr>
<tr><td>5</td><td>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td><td>불가</td><td>가능
(제출서류 없음)</td></tr>
<tr><td>6</td><td>학위연계 신청</td><td>불가</td><td>가능
(제출서류 없음)</td></tr>
<tr><td>7</td><td>재심 신청</td><td>가능
(재심신청서,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
(학과장 이상 날인))</td><td>불가</td></tr>
<tr><td>8</td><td>학위 신청</td><td>불가</td><td>가능
(제출서류 없음)</td></tr>
</table>

※ 모든 증빙서류는 국문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각 제출서류 예시는 부록 참고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제출서류와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하여야 함. 단, 평가인정학습과정 등 일부 학점원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01 학습자등록신청

학습자등록신청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인적사항, 희망학위과정/전공 등 필요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학습자등록 신청 시 주의사항

- 학습자등록신청은 **최초 1회만 신청하며**,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 등을 통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 제6항에 따라 전기(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전년도 10월 접수기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월 접수기간까지 학습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26〉 일반적인 학습자등록 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전년도12.15-.1.31	4.1-4.30	6.15-7.31	10.1-10.31
방문 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분기 신청기간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매분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 신청방법

학습자등록 신청은 정해진 기간동안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4,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표 27〉 학습자등록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분	방법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학습자등록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 학습자등록 ※ 웹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 [글번호] 648번 '[매뉴얼]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 외국교육과정 이수자 평일 (월~금) 09:00~11:30/ 오후 13:00~17:00
	•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학습자등록신청 시에는 최종학력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28〉 학습자등록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공통	① 학습자등록신청서 출력본 1부 (신청 시스템 내에서 출력) ② 최종학력증명서 1부	①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원본지참) 1부 ② 학습자등록신청서 1부 ③ 최종학력증명서 1부
	• 학력에 따른 최종학력증명서 종류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982년 1월 이후 졸업자는 홈에듀 민원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무료 발급가능) - 대학 졸업: 졸업증명서 - 대학 제적: 제적증명서 (재적증명서만 발급 가능한 대학의 경우, 제적(중퇴)일자가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함) -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대학을 2곳 이상 이수한 경우, 각 대학의 최종학력증명서 제출 ※ 석사 이상의 학력증명서는 최종학력증명서로 인정하지 않음.	
기타사항	•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자: '면허(자격)증명서' 원본 제출 * 면허(자격)증명서 발급: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홈페이지(http://lic.mohw.go.kr)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아동학(아동·가족) 전공 학습자등록 신청자 중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 사본 제출(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730번 참고) • 외국 교육기관 이수자는 방문신청만 가능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중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이용' 참고 • 북한이탈주민은 방문신청만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북한이탈주민[학력인정증명서](시·도교육청에서 발급), [학력확인서](시군구 민원 발급) 모두 제출 -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 [글번호] 10488번 '북한이탈주민의 북한대학 이수경험에 대한 학점인정 기준 고시' 참고	
비고	• **온라인신청 시 제출서류 면제 경우** - 고등학교 졸업자 : 학습자등록 온라인신청 페이지에서 본인이 입력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확인**된 학습자(1982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 정보활용동의자) - 대학 제적·졸업자 : 최종학력증명서 **온라인 첨부서비스가 제공되는 대학** 제적·졸업자	•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탑재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학력인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인정여부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전수학교, 기술학교 등)

02 학점인정신청

가. 학점인정신청 전반

학점인정신청이란,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되는 교육과정 및 자격 등을 인정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학점인정신청 전에 학습자등록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동시 가능).

■ 학점인정신청 시 주의사항

- 취득한 모든 학점(전적대학 이수학점 포함)은 학점인정신청을 해야만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점인정신청 후 접수마감일 기준 60일 이내 처리되며, 정확한 심의결과에 따른 학습설계, 인정내역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위해 취득학점은 가능한 빠른 신청기간에 학점인정신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접수마감일 이후 서류도착 시 처리예정일 추가 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정해진 기간에만 각종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 29〉 일반적인 학점인정 신청기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온라인신청		전년도12.15-1.31 (② 12.15 ~ 1.15)	4.1-4.30	6.15-7.31 (⑧ 6.15 ~ 7.15)	10.1-10.31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각 분기 신청기간 중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함. (매분기 홈페이지에 공지되는 접수계획 참고)			
	17개 시·도교육청				
교육훈련기관 단체접수		각 기관별로 상이함(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			

※ 1/4분기, 3/4분기 괄호 안 신청기간은 학위수여대상자(②-2월, ⑧-8월)의 최종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기간임.

■ 신청방법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 방문,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수수료는 1학점당 1,000원입니다.

〈표 30〉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접수처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학점인정 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글번호]648번 '[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방법' 참고
방문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평일(월~금) 09:00~17:00(토·일, 공휴일 제외)
	• 17개 시·도교육청 ※ 평일(월~금) 09:00~16:00(점심시간, 토·일, 공휴일 제외)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이수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 상단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조회 가능함.

※ 참고사항

①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우편서류도착 마감일 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등기우편 발송해야 함.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음. 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를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접수 시마다 제출해야 함.

❖ 신청 후, 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하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나의 접수현황]에서 처리과정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방문접수 또는 교육기관 단체접수 하였을 경우에는'나의 접수현황'에서 접수내역이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고,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표 31〉 신청 학점원별 제출서류

<table>
<tr><th>구분</th><th>온라인신청</th><th>방문신청</th></tr>
<tr><td>평가인정학습과정</td><td>없음</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td></tr>
<tr><td>학점인정대상학교</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td><td>좌동</td></tr>
<tr><td>시간제등록</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td><td>좌동</td></tr>
<tr><td>자격</td><td>없음
※ 온라인신청이 가능한 자격은 당해 분기 접수 계획 참조</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자격 사본(원본지참)
※ 합격확인서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td></tr>
<tr><td>독학학위제 시험합격</td><td>없음</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td></tr>
<tr><td>독학학위제 시험면제</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
•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과정이수확인서, 성적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이수과정이 확인되는 과목은 제출서류 없음.</td><td>좌동</td></tr>
<tr><td>국가무형문화재</td><td><table><tr><th>등급</th><th>제출서류</th></tr><tr><td>보유자</td><td rowspan="3">없음</td></tr><tr><td>전승교육사</td></tr><tr><td>이수자</td></tr><tr><td>전수생</td><td>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글번호]620번 '[서식11]국가무형문화재' 탑재</td></tr></table></td><td><table><tr><th>등급</th><th>제출서류</th></tr><tr><td>보유자</td><td>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td></tr><tr><td>전승교육사</td><td>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전승교육사 증서 사본(원본지참)</td></tr><tr><td>이수자</td><td>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td></tr><tr><td>전수생</td><td>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전수교육확인서
※ 서식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글번호]620번 '[서식11]국가무형문화재 탑재</td></tr></table></td></tr>
<tr><td>비고</td><td>•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서식은 신청 후, <u>온라인신청 페이지 내에서 출력 가능</u>
•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td><td>• 신청서식은 신청창구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내 '학습자신청양식'에 탑재
• 대리인 방문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위임장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탑재</td></tr>
</table>

※ 위 표에서 '대학'이라함은 대학·전문대학을 모두 의미함.

※ 4년제 대학 졸업 시, 해당 성적증명서는 제출할 필요없음(학점인정 불가).

나. 기타 신청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 중, 본인의 학습계획 등에 의해 등록 또는 인정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표 32〉 기타 신청종류 및 내용

신청종류	내용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처리 완료된 학습자등록 또는 학점인정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납부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음
학위 및 전공변경	현재 진행 중인 학위종류·전공을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
학위연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종류·전공으로 새롭게 등록하고자 하는 절차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변경	학점인정이 완료된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전공·교양호환과목: 해당 학습자의 전공에서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
재심	학점인정신청 등에 따른 심의결과(학습구분)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

※ 참고사항

[학위 및 전공 변경], [학위연계] 신청시, 기 인정된 학점의 인정내역(학습구분 등)은 변경 또는 연계 신청한 학위 및 전공에 맞게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새롭게 변경됨.

▸ 신청방법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분기별 접수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므로 각 분기마다 공지되는 접수계획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표 33〉 기타 신청 종류별 신청방법

신청종류	신청방법	주의사항	수수료
학위 및 전공 변경 학위연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 온라인신청 ※ 홈페이지-학점인정 신청-해당 신청 페이지 •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평가인정학습과정 수강 교육 훈련기관으로 신청가능 여부, 방법 문의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홈페이지-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확인 가능	• 제출서류 없음. •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됨. •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분기별 1회에 한해 신청가능 • 학위 및 전공 변경신청, 학위연계 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 학점인정신청이 가능	없음
재심	• 방문신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교육청) • 교육훈련기관 단체신청	• 제출서류 ① 재심신청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 ② 해당 과목 이수 당시의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이상의 날인 필) 등	

※ 학점인정 심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재심신청서를 원장이 고시한 일자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일정은 당해 접수계획을 참조

03 학위신청

학위신청이란 학위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 학위신청 시 주의사항

-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정해진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학의 장 명의 학위수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학위취소는 불가합니다.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학위신청 시 미신청한 학점은 추후 다른 학위과정으로 연계 시 추가로 학점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위수여 절차

학점은행제 학위는 교육부장관 명의 또는 대학의 장 명의로 수여받을 수 있고,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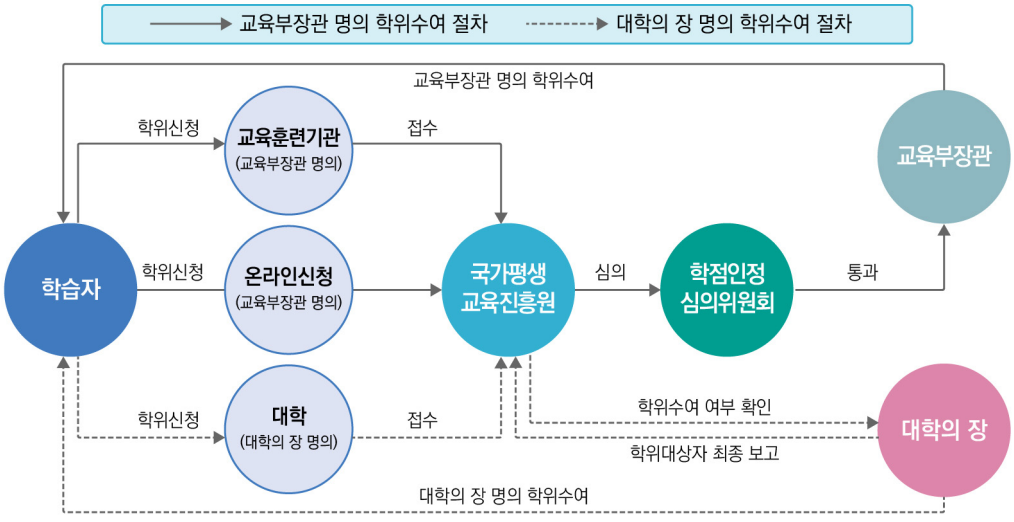

[그림 9]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절차

▸ 신청기간 및 방법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공휴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분기별 접수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명의 학위신청자는 해당 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표 34〉 일반적인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

구분	접수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기(2월): 전년도 12월 15일~1월 15일** **후기(8월): 6월 15일~7월 15일**	**온라인신청** [홈페이지-학위신청-학위신청 및 취소] (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글번호 635번 '[매뉴얼]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참고
	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으로 문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해당 대학		

※ 주의사항

- 일반적인 학위신청기간 안내입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반드시 당해 접수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월 학위수여예정자는 4분기(10월), 8월 학위수여예정자는 2분기(4월) 신청기간 내에 학습자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함.**
- 학위수여예정자는 학위신청기간에 최종적인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고, 등록된 학위과정 및 전공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학위신청'을 해야 함.
- 학위신청 마감 후 학위요건심사 결과확인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함. 정해진 기간동안 [학위합격/탈락여부]를 스스로 확인해야 함(교육훈련기관 신청자 또는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학위신청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 또는 대학을 통해 확인해야 함).

04 FAQ

Q1.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분기별 정해진 신청기간동안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기별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온라인 신청기간 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 출력본 및 증빙서류는 정해진 기간 안에 우편 발송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매뉴얼]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방법]에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스템 접속 방법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s://www.cb.or.kr)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아래 방법 중 택일
  ① [학점인정 신청] 메뉴 -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메뉴 클릭
  ② 홈페이지 중간 이동 메뉴 중 [분기별 온라인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등 각종 신청] 안내 메뉴 - [학습자등록 신청], [학점인정신청] 메뉴 클릭

Q2. 개명을 한 경우, 학습자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후의 정보가 모두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신분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이후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된 주민등록표초본(원본)을 팩스(02-3780-9855)로 송부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음.

Q3.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에 근거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시 수수료는 4,000원이고,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외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학위연계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현금납부, 무통장입금, 카드 결제, 가상계좌가 가능하며, 접수처별 수수료 결제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접수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3(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신청하는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학점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3. 제8조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4.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위수여를 받으려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인정·학점인정·학력인정 또는 학위수여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Q4. 기초생활수급권자일 경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2항에 근거).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학점은행제 학점인정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시에는 먼저 학점인정신청 시스템에서 수수료를 결제하신 후, 제출서류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동봉하면 확인 후 학습자가 등록한 계좌로 수수료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접수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면제 대상이 아님.

※ 위 답변은 학습자가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안내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신청, 교육청 방문신청 등은 면제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5.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시 희망학습구분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과목은 해당 대학에서 교양(교필, 교선 등 포함)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성적증명서에 교양(교필, 교선 등)으로 기재된 과목은 희망학습구분을 교양으로 선택하고, 교양 외의 학습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 등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처리 시 서류검토 및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학점인정이 완료되며, 완료 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인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6. 2020년에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였습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2급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사 1,2,3급 역시 온라인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한 자격입니다. 다만,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의 경우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2005.2.9)에 따라 자격검정의 시험과목 수가 축소되고, 필요과목을 대학 등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3급을 학점인정대상 자격에서 제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필기시험, 면접시험 모두 시험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2급,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소명자료 제출 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온라인 학점인정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Q7. 2021년 1학기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됩니다. 2021년 후기(8월) 학위신청기간(2021.6.15~2021.7.15) 중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등록은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후기(8월) 학위수여예정자라면, 반드시 2021년 2분기(4월) 신청기간까지는 학습자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습자등록은 학력 등에 대한 조사·확인에 일정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한다는 점,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 일정 학점 이상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은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8조제6항

원장은 제1항의 학습자등록을 학위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학습자등록기간에 하게 할 수 있다.

Q8.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교육청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어떠한 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합니까?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인정신청서 1부, 별지서식 1부, 학점취득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졸업한 전문대학은 학점인정대상학교에 해당하므로 학점인정신청서 및 별지 제7호 서식, 성적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서식에는 성적증명서를 바탕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습과목에 대한 희망학습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년도/학기,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년제 전문대학 졸업 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80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해당 학점에 상응하는 학습과목을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표 35〉 방문 학점인정신청 시 학점원별 제출서류

구분	신청서	별지서식	학점 취득 증빙서류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증빙서류 없음
학점인정대상학교		별지 제7호 서식	• 이수 대학에서 발급한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2개 이상 대학 졸업(제적)자는 각 대학 졸업(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시간제등록		별지 제8호 서식	• 성적증명서 1부
자격		별지 제9호 서식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별지 제10호 서식	• 시험합격: 증빙서류 없음. • 시험면제교육과정: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급하는 과정이수 확인서, 성적증명서
국가무형문화재		별지 제11호 서식	•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인정서 사본(원본지참) • 전승교육사: 문화재청에서 발급한 전승교육사 증서 사본(원본지참)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급 명칭이 달라진 경우 가장 최초에 교부받았던 증서 사본(원본지참) • 이수자: 보유자가 문화재청에 보고한 이수증 사본(원본지참) • 전수생: 보유자(보유단체장)가 증명하는 학습자 전수교육 확인서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관련신청양식 탑재

Q9.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까?

학점은행제는 매년 2월과 8월, 두 번 학위수여가 이루어집니다(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 학위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학위수여가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해당 기간 중에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요건이 된 상태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 취득하는 학습자의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인정받았을지라도 학위신청 기간에 학위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수여가 불가능합니다.

※ 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의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자'에 한하며,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는 해당 대학으로 신청해야 함.

Q10. 학위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과는 달리 학위신청을 해야만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2월 학위: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 8월 학위: 6월 15일 ~ 7월 15일). 반대로 본인이 학위 신청하여 정상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어떠한 사유로도 취득된 학위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학위수여식은 2월에만 시행되며, 8월에는 학위수여식이 없습니다. 8월 학위취득자는 2월에 학위수여식에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로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하기를 원할 경우 수업을 이수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미리 신청기간을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11. 2021년 후기 A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습자입니다. 학위신청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인 경우 해당 대학으로 학위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학에 문의하여 제출에 필요한 서류(증명서 등)를 확인하신 후 해당 대학에서 정한 기간 중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위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위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각 대학으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자가 접수되면 해당 대학은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학칙 및 학위증 사본, 증명서 양식 등을 정해진 기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위수여요건 충족 및 이중학위수여 여부를 확인하여 대학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대학은 그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Q12. 전문대학에서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과정으로 경영학 전공을 하고자 하는데, 전공변경신청을 하면 됩니까?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란, 학점은행제에 학습자등록이 되어 있는 학습자가 다른 학위종류 및 전공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시각디자인학 전공〉으로(학위변경 해당), 〈전문학사 정보처리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학위 및 전공변경 해당),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전공변경 해당)변경하는 경우, 모두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이라고 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의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을 하는 것은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학위 및 전공변경은 아래 3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학위변경: 〈전문학사 시각디자인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시각디자인학 전공〉으로 변경

② 학위 및 전공변경: 〈전문학사 정보처리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변경

③ 전공변경: 〈학사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학습자등록된 학습자가 〈학사 멀티미디어학 전공〉으로 변경

Q13. 신청기간 중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까?

전공변경 신청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미리 공지한 기간 중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학위 및 전공변경 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의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며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0]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페이지

- 안내문 숙지 후 [전공변경요청내용]에 변경 희망학위종류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체크박스에 선택된 학습과목 확인.
  - 체크를 해제하는 경우 학점인정취소 신청으로 간주됨을 주의할 것.
-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희망하는 학습구분(전공 또는 교양) 직접선택이 가능하며, 그 외 학점원은 희망하는 학습구분변경사항을 [학습구분변경]에 기재하여야 함.
- 변경신청 내역 확인 후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버튼 클릭 시 신청완료 됨.
- 학위 및 전공변경 신청 시 취득한 학점의 학습구분이 변경되며, 학사에서 전문학사로 변경 시 1개 교육훈련기관(평가인정학습과정) 최대 인정학점 초과 시 취소할 과목을 제외한 후 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은 분기별로 한 번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Q14. 학점은행제 정보처리 전공으로 공업전문학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공학사 컴퓨터공학 전공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학위 과정을 하고자 한다면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위연계신청'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자가 다른 학위 및 전공으로 등록을 하는 절차입니다.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또는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학습자가 타전공 학사·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 학습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연계신청을 하면 됩니다.

Q15. 신청기간 중 학위연계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방문접수가 가능합니까?

학위연계신청은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기간 중 미리 공지한 기간 중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한 학위과정으로 연계 처리가 완료되면 학습자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되며 학위연계신청 처리가 완료된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위연계신청 페이지

- 안내문 숙지 후 [연계희망 학위 및 전공선택]에 연계 희망학위종류 및 희망전공을 선택하여야 함.
-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체크박스에서 선택 해제가 되어 있는 과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으니 확인하여야 함.
  - 전문학사 → 학사로 연계 시 80학점을 초과할 경우 80학점 내에서 과목 선택 및 절사할 과목의 학점을 수정하여야 함.
  -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학습구분을 선택할 수 있음.
  - 타전공 과정의 경우 연계되는 학점이 없으므로 [다음] 버튼 클릭시 학위연계 신청 완료됨
- [학위연계신청] 버튼 클릭 시 신청완료 됨.

Q16. 학점은행제 식품조리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전문대학 이수학점에 대한 인정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니, [외국요리실습1] 과목을 전공선택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문대학 재학 당시 [외국요리실습1]을 서양요리의 이론과 조리실습을 주 내용으로 학습하였습니다. 해당 학습과목을 전공필수 학습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인정신청 시 학습과목명을 기준으로 희망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외국요리실습1] 과목의 전공필수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받고자 한다면, 신청기간 중 재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심신청 시 해당 과목의 이수 당시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직인 날인)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고, 결과는 일반적인 학점인정처리와 마찬가지로 두 달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청은 학점인정 후 정해진 신청기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재심신청 시 강의계획서 원본(학과장 직인 날인)을 제출해야 하며, 단순히 대학 또는 담당교수의 확인서 등은 강의계획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17.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인정 받은 학습과목 중 성적이 낮은 2과목을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가 학점인정이 완료된 학점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분기별 신청기간 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학점인정신청 시 납부한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학위수여 이후에는 학습자의 희망에 따른 학점 및 학위 취소는 불가합니다.

Q18.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취소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뿐 아니라 취소신청 또한 정해진 시기(매년 1,4,7,10월)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분기별 신청기간 중 온라인으로만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STEP1 유의사항 / STEP2 인정 취소 과목 선택 / STEP3 취소원 신청 / STEP4 신청완료

• 이전 분기까지 등록된 학습자등록 및 인정받은 과목에 대해서 신청목록에 나타납니다.
• 신청한 과목은 학점인정 취소가 되므로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 등록 취소

평가인정 학습과정

☐	학습구분	학습과정명	학점	출석	성적	이수년월일	교육훈련기관
☐	일선	관광일본어 I	3	88	70	2007-03-05 ~ 2007-06-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일선	법죄학	3	95	88	2007-03-05 ~ 2007-06-2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양	태권도 II	3	100	75	2007-09-03 ~ 2007-12-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양	호신술	3	100	72	2007-09-03 ~ 2007-12-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일선	관광법규	3	94	70	2007-09-03 ~ 2007-12-2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 시험합격 과목 신청

☐	학습구분	학습과정명	학점	시험합격년도
☐	전선	사회학개론	4	2014-01-01
☐	교양	국민윤리	4	2014-01-01
☐	교양	국어	4	2014-01-01
☐	교양	국사	4	2015-01-01
학점 소계			16	

이전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그림 12]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 신청 페이지

- 학습자등록을 취소하려면, 학습자등록 취소 선택박스 체크 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 학습자등록을 취소하면 현재까지 인정받은 학점인정사항을 비롯한 전체 인정 사항이 삭제됨
- 이전 분기까지의 신청에 따른 학점인정사항이 학점원별로 신청목록에 나타나며, 취소할 과목에 대해 체크박스 선택 후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취소원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야 함.

Q19. 전공교양호환과목이란 무엇이며,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 변경신청을 방문으로 할 수 있나요?

전공교양호환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학습과목들 중 전공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습과목입니다.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 → 표준교육과정 조회 → 전공교양호환과목] 클릭시 과목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과목명 검색도 가능합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의 학습구분 변경 신청은 신청기간 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

※ 전공교양호환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기 인정된 학습과목들 중 '전공교양호환과목'만 신청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13] 개인학점인정 신청시스템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 페이지

Q20. 외국에서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나 외국인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는 '고졸' 학력으로 학습자 등록이 가능하여 전문학사학위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여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중 하나를 부여받은 경우)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Q21. 국내에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자퇴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국내 및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마친 것을 증명하는 경우 '고졸' 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 고등학교는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고 학력인정확인이 가능한 학교여야 합니다.

1. 외국 교육과정 인정기준
   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제외
   나.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 교육연한 기준으로 인정함
   다. 교육과정 또는 교육기관은 소재국 관계법령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해 필요사항의 확인이 가능해야 함
   ※ 비인가학교, 어학연수 교육기관, 외국의 검정고시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인정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음

Q22. 12년 미만의 학제로 운영되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12년 미만의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므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2개 이상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Q23.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는데 총 12년 미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2개 이상 국가에서 총 12년 미만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2개국 이상에서 총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하고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고졸'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당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을 경우 대학 이수학점을 심의하여 12년 학제 부족부분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 동일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외국검정고시는 불인정. 사이버학습, 홈스쿨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시 인정
-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인정
- 해당국가에서 학력을 인정해야 하며, 교육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Q24.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습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및 [학력확인서]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고졸'학력으로 학습자등록이 가능하며, 통일부장관이 학력인정 사항을 증명하는 [공문] 제출 시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가능합니다(공문제출 시 학교명 및 졸업일 등이 기재된 공문의 붙임자료 포함).

Q25.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습자 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12년 학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의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영어 외의 외국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원본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인증한 서류)이 필요합니다.

Q26.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학습자 등록 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와 학력인정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각 서류가 영어 외 외국어일 경우 한글번역공증이 필요하며 고등학교 졸업에 대한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표 36〉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신청 구비서류

구분		고졸	대졸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혹은 초본(내국인)	○	○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외국국적동포), 영주증		
	• 귀화한 내국인: 귀화 및 개명사실 확인을 위해 기본증명서(상세내역 포함) 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초본 • 대한민국 국적 → 외국 국적: 말소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제출		
학력 확인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일부터 조회하여 발급)	○	○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졸업장(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 대학 졸업장(졸업증명서), 학사학위증(일본, 중국 등), 성적증명서 각 1부	-	○
	• 고등학교 학력인정확인서	○	-
	• 대학 학력인정확인서	-	○
	• 영어 외 외국어인 경우 한국어 번역 공증 각 1부	○	○

※ 고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12학년 미만 이수자의 경우,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대학 재적 또는 제적증명서, 성적증명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접수 및 서류 제출하는 경우 외국서류에 대해 사본(원본대조필 필수)제출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제출한 서류는 보존연한 1년이 지나면 파기
※ 각 증명서 예시는 '부록' 참고

Q27. 학력인정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디에서 발급이 가능합니까?

학력인정확인서란, 학습자가 졸업 또는 제적한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교육기관인지를 증빙하는 문서입니다. 학력인정확인서는 해당국 공공기관(교육부, 교육청, 대사관, 영사관 등)에서 발급한 서류여야 하며,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으로 서류 대체가 가능하나, 해당 대체서류가 학교의 학력인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발급관련 사항은(www.0404.go.kr〉 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학력인정확인서 미발급 및 아포스티유 비협약 국가의 경우, 해당국 소재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아포스티유 확인(참조: www.0404.go.kr-영사서비스/비자-영사서비스-아포스티유)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을 받을 때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표 37〉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2021년 5월 기준)

지역	가입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팔라우, 필리핀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

Q28. 국내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다음의 국가의 경우 국내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 38〉 국내 학력인정확인서 발급처

국가	발급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비고
중국	서울공자아카데미	http://www.cis.or.kr 02-501-7300	- 졸업장 인증을 통하여 "학력인증보고"서류 발급 ※ 기존 "학위인증보고"를 발급한 원본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서류로 접수 가능
일본	주한 일본대사관 영사부 (고등학교, 대학교)	02-739-7400	- 고등학교 및 2년제 단기대학, 4년제 대학에 대하여 "학교장 직인 확인서(=인장증명서)"발급
호주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02-2003-0102	- 고등학교, 대학교에 대하여"확인서" 발급
영국	주한 영국문화원	https://www.britishcouncil.kr/ 02-3702-0601	- "교육기관 인가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 (영국유학 ⇒ 영국학력 및 교육기관 확인서비스)
대만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https://www.roc-taiwan.org/kr_ko/index.html	- "학교 인가 확인서" 발급 -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식 다운받아 이메일로 신청 가능
미국	http://ope.ed.gov/dapip/#/home (DAPIP) http://www.chea.org (CHEA) ※ 대학교의 경우, 상기 홈페이지에서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 지원자는 학교 인가 여부를 상기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이 경우, 학력인정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한미교육위원단 학교인가확인서 발급업무는 2020년 9월 30일부로 종료 - 발급업무 종료 전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받은 학교인가확인서 원본서류가 있을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가능 ※ 본 사항은 미국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해당함.		
뉴질랜드	http://www.nzqa.govt.nz/providers/index.do ※ 상기 홈페이지에서 학교 인가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 ※ 지원자는 학교 인가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해당 내용 출력하여 제출. 이 경우, 학력인정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홈페이지에서 인가 확인이 불가한 학교의 경우 주한뉴질랜드대사관에 문의		

Ⅳ

학점은행제 활용

1. 시험 응시자격 부여
2. 자격(면허)취득
3. FAQ

Ⅳ
학점은행제 활용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학위수여로 각종 자격 취득 또는 시험응시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단, 자격 취득 및 시험관련 세부사항은 자격시행기관 및 시험주관기관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01 시험 응시자격 부여

〈표 39〉 학점은행제를 통해 응시 가능한 시험

시험명	응시 요건
국가기술자격 시험	• 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106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 학점인정대상학교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 • 산업기사: 학점은행제 관련전공 전문학사 학위 취득자 또는 41학점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http://q-net.or.kr, 1644-8000)
독학학위제 시험	1~3과정은 고졸 이상 학력소지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4과정은 학점은행제와 동일전공으로 일정학점을 인정받아야 함. • 1~3과정: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소지한 자 • 4과정: 학점은행제로 105학점(전공 16학점 포함) 이상 인정받은 자 • 문의처: 독학학위검정센터 (http://bdes.nile.or.kr, 1600-0400)
공인회계사 시험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 문의처: 금융감독원(http://cpa.fss.or.kr, 국번없이 1332)
편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문의처: 편입학 시험 응시자격은 대학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
대학원 입학 시험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특수·전문대학원 등은 선수과목 이수 등 최종학력 이외의 별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의처: 각 대학원 입학관리처(각 대학의 편입학 응시요강 참고)

02 자격(면허)취득

〈표 40〉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 가능한 자격

자격명	자격 요건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및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 1. 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학사 과정)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02-786-0845)
보육교사 2급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1의2호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자격(2급) 취득 기준이 변경되었음. 학점은행제 이용자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영역별 필수과목 변경, 대면교육 강화, 보육실습 기준 등이 강화되었고 학위취득시기와 과목 이수시기에 따라 자격발급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자격요건을 확인** 해야 함. •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평생교육사 2,3급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문의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자격·연수센터(http://lledu.nile.or.kr, 1577-3867)
건강가정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3항에 의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 포함)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상담전화(http://kihf.or.kr, 1644-6621(3번))
2급 정사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학점은행제 문헌정보학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 • 문의처: 한국도서관협회(http://www.kla.kr, 02-537-6117)
이·미용사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학점은행제를 통해 이용 또는 미용에 관한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취득한 자 • 문의처: 가까운 시·군·구청
한국어교원 2급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가에 따라, 학점은행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공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국어교원 2급 자격 관련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 문의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http://kteacher.korean.go.kr, 02-2669-9671~6)

자격명	자격 요건
청소년지도사 2,3급 (필기시험 면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의거하여 필기시험이 면제되므로, 필기시험 없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단,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 모두를 전공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함. 학점은행제 등록 시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q-net.or.kr, 1644-8000)
문화예술교육사 2급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필요한 학력·경력요건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자격발급이 가능함. • 문의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http://acei.arte.or.kr, 070-7825-1460)

※ 주의사항

- 위 자격요건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자세한 요건 및 변경 사항은 해당 자격 발급처로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자격 취득 시에는 자격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받고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이라도 누락하고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자격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03 FAQ

Q1. 학점은행제 경영학 전공의 학습자입니다.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12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가능합니까?

경영학 전공으로 120학점을 인정받은 학습자가 정보처리기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경우 총 학점으로는 106학점 이상이지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4의2 비고2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자격취득, 시간제등록 이수,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 등) 18학점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은 법령에 따라 자격응시종목과 관련학과로 제한되는 등 여러 요건이 있으므로 자격에 대한 세부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자격관련문의처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고시하고 있으므로 응시하고자 하는 시험의 관련전공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Q2.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사편입이 가능합니까?

「고등교육법」 제23조의2와 동법시행령 등에 의거 대학,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칙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는 편입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편입 지원 자격은 각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자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관리과 등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교육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으므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대학원마다 지원자격을 정하므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원의 지원자격을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특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사학위 전공명, 선수과목 이수 등 세부적인 지원요건이 있으므로, 학습자께서 진학을 희망하시는 교육대학원의 입학지원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4.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소지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 가능하므로, 학습자의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 시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Q5. 전문대학 졸업자입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위소지자 포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의 경우 이미 전문학사 학위는 소지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법정이수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 받으면 됩니다. 단, 자격 취득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격 시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TEL: 02-786-084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2020.1.1 시행)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 변경
- 학점은행제의 경우, 2020. 1. 1 이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습자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됨.

Q6.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도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증 발급요건과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은 다른 사항이므로, 보유한 전문대학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시 필요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의 학위수여요건을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7. 대학 졸업자입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대학 재학 중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이수하였습니다. 나머지 과목만 이수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습자께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 취득만을 목표로 한다면, [사회복지개론]을 제외한 과목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인정받은 과목은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로 자격관련 교과목 이수여부를 증빙하고, [사회복지개론]과목에 대해서는 졸업한 대학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사회복지사협회로 제출 후 자격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8. 위의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과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모두 하고자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학 졸업자이므로,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전공 학위의 경우 학위 취득 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 등에 의해 전필을 포함한 전공 48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대학 재학 중 이수한 [사회복지개론]과목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필수 10과목과 전공선택 6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만 사회복지학 학사(타전공)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Q9.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에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였지만, [보육실습] 과목만 이수하지 못하였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실습] 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해야 하고, 해당 학위과정에서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인정 받아야 합니다. 학습자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실습] 과목 추가 이수만으로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고, [보육실습]과목을 포함하여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시 자주하는 실수**
- 보육교사 관련 교과목 중 일부만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 학위취득 후 나머지 교과목을 포함하여 새롭게 학위를 취득해야 함.
- 학위취득 시, 이수한 교과목을 다음 학위과정에 인정받기 위해 남겨두는 경우
  → 학위취득 이전에 이수한 미인정 교과목(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등)은 다음 학위과정에 학점인정이 불가함.

Q10.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으로 보육교사 2급 자격발급에 필요한 교육영역 및 영역별 필수교과목 등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을 준비중인 경우 보육교사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전문학사 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자격기준에 따른 교육영역별 필수 교과목이나 대면교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8월 학위취

득자까지는 종전기준에 따라 과목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 취득자라고 해도, 2017년 3월 1일 전에 보육실습 등 대면교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미 이수한 경우에는 대면교과목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목이수시기, 학위취득시기에 따라 자격취득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발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반드시 자격 주관처인 한국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 http://chrd.childcare.go.kr, 1661-5666

Q11.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까?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009년 8월 9일 이후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자 포함)로서, 2008년 2월 15일 이후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으로 교육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 발급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격 관리처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2.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시험을 면제받고자 합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시 어느 전공으로 등록해야 합니까?

필기시험 면제를 위해서는 자격검정에 필요한 교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내용이 증빙되어야 합니다(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 표기). 학점은행제 〈학사 청소년학 전공〉으로 등록 시 관련 과목이 전공으로 인정됩니다.

※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됨.

Q13. 학점은행제에서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자격증 또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등 각종 자격증은 자격을 주관하는 기관(또는 부서)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자격발급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학점은행제에서 대체과목으로 인정받더라도 자격관련 교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주관기관을 통해 발급기준을 숙지하시고, 자격 발급에 필요한 교과목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자격관리 과목 예시]**

- 보육교사·사회복지사 관련 과목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수 ⇒ 학점인정대상학교 :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 이수

※ 학점은행제에서는 '인간행동 및 사회환경'이라는 과목을 인정받았지만,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의 이수교과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자격 발급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함.

Q14.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 학위취득 후, 대학원 진학 시 최종학교명은 어떻게 기재하여야 합니까?

제도 도입 초기부터 교육부에서 각 기업체 및 대학에 일반적으로 출신학교는 '학점은행제'로, 소재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소를 사용토록 일괄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코드부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타 문제가 있는 경우, 대학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5. 2021년 전기(2월) 학점은행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입니다. 2020년 1학기에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이수한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인정받지 않은 채로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해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학위취득 이전에 학습과목을 이수하였으나 학점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외 학점으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령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 학위취득일 전에 이수한 학습과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습과목을 미인정 상태로 남겨두고 학위를 취득한 결과,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 등을 취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습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취득학위에 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P)학점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였으나 학점인정신청절차 누락 등으로 이수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 학습자 중 법령에서 정한 국가자격취득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학위에 특별(P)학점으로 누적인정하게 되었습니다(단, 평균평점에 산입되지 않음). 따라서 학습자가 학위취득 전 이수하였으나 미인정 상태인 [사회복지개론] 과목을 학점인정받고자 할 경우, 학점인정신청기간 중에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소명자료(미신청학점과 해당 자격취득 여부 관계성 등)를 제출하여 학점인정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학점인정 기준(연간/학기당 이수제한 학점, 1개 교육훈련기관 이수제한 학점 등) 내에서 학점인정 가능합니다.

※ 소명서: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575번 참고]

V

학습지원

1. 증명서 발급
2. 상담 서비스
3. 도움자료
4. FAQ

V
학습지원

01 증명서 발급

학점은행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41〉 학점은행제 증명서 종류

종류	내용	발급형태
학위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국문/영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예정임을 증명하는 문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로 인정받은 학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및 성적이 기재된 문서	
학점인정증명서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학점인정증명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용)	학습구분, 학점원에 따른 인정학점 및 최종 학점인정일이 기재된 문서 * 이수과목, 성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국문
법학과목학점취득증명서	법학과목 학점취득을 증명하는 문서	
학점취득증명서 (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	공인회계사시험 응시를 위한 과목 이수를 증명하는 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수강한 과목의 교육비용에 대한 연말세액 공제 증빙문서 * 대학부설평생교육원에서 수강한 과목 또는 2017년 3월 10일 이후 수강을 시작한 과목은 해당 교육련기관에서 발급	

※ 주의사항

-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상에 성적이 기재되고 평점에 포함되는 학점원은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며, 학점인정대상학교, 자격, 독학사 시험합격, 국가무형문화재를 통해 이수한 학점은 성적이 기재되지 않으며 평점평균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방법 및 발급수수료

〈표 42〉 학점은행제 증명서 발급방법

구분	신청방법	발급수수료
인터넷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증명서 신청]에서 '증명서 종류-증명서 신청' 버튼 클릭	국/영문: 500원 (추가 1통당 100원)
방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발급(신분증 지참)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증명서 발급수수료 및 우편요금 입금증' 사본을 팩스(02-3780-9850)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74번 '증명서 발급안내 및 우편 수령 신청서' 참고	국문: 300원 영문: 500원 (우편요금 별도)

※ 주의사항

- 학위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학위수여일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 지참) 제출
  * 위임장: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526번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탑재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인터넷발급만 가능**하며, **일정학점**(전문학사: 40학점, 학사: 100학점)이상의 학점을 인정 받고 추가 이수 및 보유한 학점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학위 요건 충족 시 발급 됨
- '학점취득증명서(공인회계사시험 제출용)'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함. '성적증명서' 제출로 시험응시 가능함. 제출서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격 문의처를 통해 확인

02 상담 서비스

▸ 전화상담

학점은행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담지원을 위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국번없이)1600-0400**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이용방법: 문의사항에 따른 번호 선택 후, 안내 메시지에 따라 [개인정보(학번 또는 생년월일)] + [#] 입력 후 자동응답서비스 또는 상담원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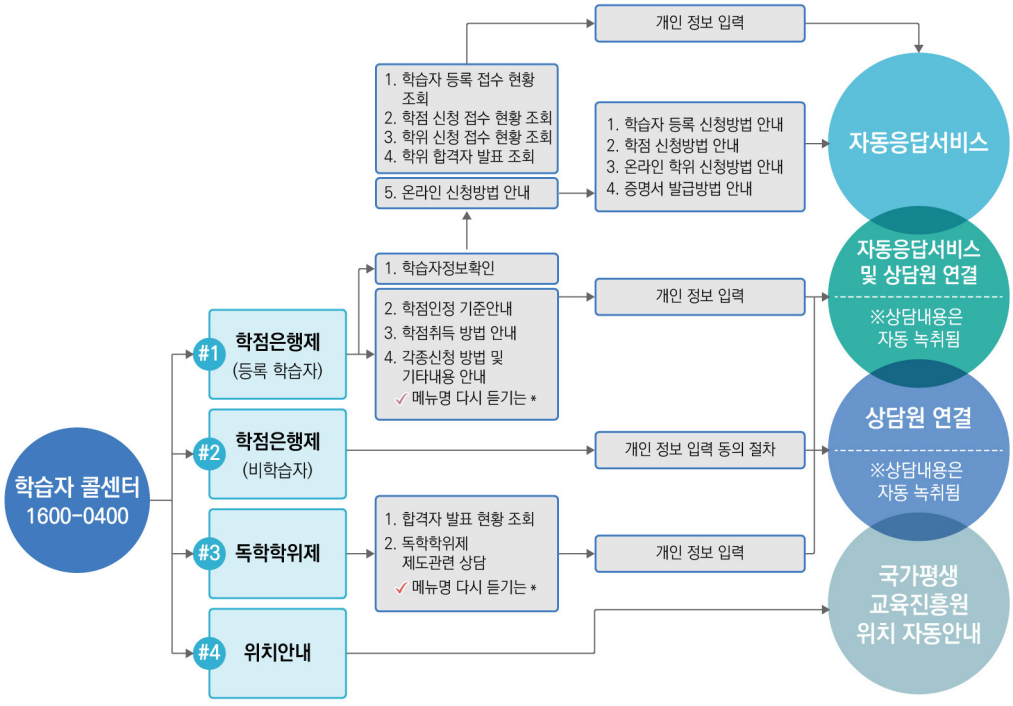

[그림 14] 콜센터상담 도식도

※ 학번: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을 완료한 학습자는 학점은행제 학번이 부여되고, 독학학위제 시험에 응시하여 한 과목이라도 합격한 학습자는 독학학위제 학번이 부여됨.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마이페이지-학적부조회] 메뉴를 통해 학번조회가 가능함.

※ 개인정보 확인 및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학번 또는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확인할 수 있음.

※ 학습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

※ 학습자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상담 내용은 자동 녹취 됨.

※ 학점은행제 콜센터는 발신자 부담서비스임.

※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기간에는 통화량이 급증하여 상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

■ 전화상담의 범위

상담구분	상담가능여부	기타
제도전반	가능	
학점취득방법(학습구분, 중복과목 등)	가능	5개 이상 과목은 온라인으로 문의
행정사항	가능	
학습설계	불가	온라인 또는 방문만 가능

※ 학습설계는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여야 하고, 학점취득방법에 대한 상담은 가급적 온라인 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일반상담

학점은행제 이용에 관련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온라인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온라인 일반상담-상담하기]에서 문의내용 작성

〈표 43〉 온라인 일반상담 구분

구분	문의 내용
제도전반	학점은행제 제도전반 및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 ※ 전반적인 내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학점은행제 소개] 부분을 참고한 후, 이해되지 않는 부분 중심으로 문의
학점취득방법	학점원별 학점취득방법과 관련한 세부사항 문의
학점인정신청/등록	각종 신청기간, 신청내용의 처리상태, 환불사항 등 행정절차와 관련한 사항 문의
학습구분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원의 학습구분 문의 ※ 단,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전체 학점에 대한 문의는 '온라인 학습설계' 이용 시 답변 가능
중복과목	학습구분의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과목 간의 중복여부 문의(홈페이지-학점은행제 소개-제도이용 주의사항-학점인정 주의사항-중복과목 및 대체과목에 처리기준 확인 요망) ※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10178번글「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기준 고시」 참조
외국학력	외국학력/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습자등록 관련 문의 ※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중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참조

※ 보유한 모든 학점의 학습구분 및 학위수여요건 검토는 [온라인 학습설계] 이용 시 답변이 가능함 (홈페이지-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 신청).

▸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

온라인 학습설계 상담이란 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에 맞는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시스템입니다. 학습설계 상담은 학습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당해 기준에 따라 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용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학점인정내역은 학점인정신청 후 처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용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에서 신청
  * 학점은행제 미등록 학습자는 학습설계 상담신청 시 이수내역 확인 및 본인 확인 등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 홈페이지 [알림마당-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참조

▸ 방문 상담

학습자들의 시간, 편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신청 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습지원→상담신청→방문상담] 메뉴에서 예약 신청
- 구비서류: 상담 예약증, 신분증, 보유학점에 대한 증빙서류 원본 및 사본 1부(증빙서류 미지참 시 상담서비스 제공 불가)
- 대리인을 통한 방문상담 신청 시 필요서류: 위임장 1부(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알림마당] - [자료실] 472번 방문상담 위임장 및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학습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취득학점을 증빙하는 증빙서류 및 방문상담 예약 확인증
- 기타: 방문 학습설계 상담 시 제공되는 내용은 '온라인 학습설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안내받을 수 있음. 학점인정신청기간 및 학위수여업무처리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방문상담일정은 상황에 따라 중단·변경될 수 있으며, 중단 시 [홈페이지-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됨.

03 도움자료

▸ 학점인정 표준 DB 검색 기능

「학점인정 표준DB」는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한 과목의 학습구분을 학점은행제 전공에 따른 학습구분(전공, 교양, 일선)으로 안내하는 메뉴입니다.

- 메뉴위치: 홈페이지→학습지원→학점인정 표준 DB
- 공개전공(2021년 5월 기준)
  * 학사(31개 전공): e-비즈니스학, 간호학, 건축공학, 경영학, 매체공학, 멀티미디어학, 문헌정보학, 물리치료학, 미용학, 법학, 부동산학, 사회복지학, 소방학, 식품생명공학, 식품조리학, 신학, 실용음악학, 아동학, 연극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전자공학, 정보보호학, 정보통신공학, 체육학, 치기공학, 컴퓨터공학, 태권도학, 패션디자인학, 피아노, 행정학, 회화
  * 전문학사(5개 전공): 경영, 사회복지, 실용음악, 아동·가족, 정보보호 전공
  * 교양

- 주의사항

※ 학습과목의 중복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복과목의 경우 한 과목만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학습과목들의 중복여부는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10178번글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평가인정학습과정은 본 메뉴와 관계없으며, 평가인정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명과 일치해야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됨.

※ 확인되는 과목은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함.

▸ 리플릿

학점은행제 리플렛은 학점은행제 이용을 돕고자 주제별로 간단한 설명을 담고 있는 간행물입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간행물] 내 '학점은행제 안내자료(리플릿 7종)' 다운로드

번호	내용
PL1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에서 학위수여까지
PL2	학점은행제 학점취득방법
PL3	학점은행제 이용 시 주의사항
PL4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PL5	학점은행제 서식 작성방법
PL6	학점은행제 상담 신청방법
PL7	외국교육기관 이수자의 학점은행제 이용

▸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

학점은행제 각종 온라인 신청 매뉴얼이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이용방법: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학습자 관련자료]에 탑재된 매뉴얼 다운로드
- 종류: 온라인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방법, 교육부장관 명의 온라인 학위 신청방법,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등

04 FAQ

Q1. ‘학위증’과 ‘학위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학위증’은 학위수여 시 한번만 발급하는 증서로써 졸업장과 같은 본인 보관용 문서인 반면, ‘학위증명서’는 진학·취업 등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때 여러 번 발급받을 수 있는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시 ‘학위증’을 수령하고 최종학력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방문·인터넷·우편 중 학습자가 희망하는 방법을 통해 학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2021년 전기(2월) 학위취득자입니다. 학위증은 어떻게 수령할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시 학위수여일 이후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학위증을 우편으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2008년 후기(8월) 학위수여자부터 우편신청 가능, 이전 학위수여자인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457번 참고).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내방하여 학위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 수령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이 어려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자료실 ‘학습자 관련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학습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제시할 경우 대리인에 의한 학위증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Q3. 학점은행제 증명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증명서는 방문, 인터넷, 우편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 수수료(국문 300원, 영문 500원) 납부 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울 경우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증명서 발급 수수료 국문 1통당 300원, 영문 500원
  * 인터넷 발급 수수료 최초 1통 500원 / 동일증명서 추가 발급 시 추가 1통 당 100원
※ 인터넷 증명서 발급 도중에 발생한 문제 사항은 웹민원센터(TEL: 1644-2378)로 문의해야 함.

Q4. 2021년 8월에 학사학위를 받을 예정이며, 현재 전문대학 80학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지원서류 제출을 위해 학위수여예정증명서가 필요할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2010년 9월 1일부터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 제4항에 근거).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학위요건 충족여부가 확인될 경우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80학점만 인정

받은 상태에서는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는 학점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온라인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 시스템을 통해 다음의 과정을 거쳐 요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당시 인정받은 학점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학습자의 경우 요건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미지 파일로 첨부한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 후, [발급가능] 시에는 학위신청페이지에서 학위신청(공인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학위신청기간에 별도로 학위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추후 인정받지 않은 학점에 대하여 학점인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학위신청기간에 다시 한번 학위신청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해당 학위수여일에 학위수여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학위신청기간에 학위신청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신청하는 학위신청은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입니다.

①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
②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심사 신청
기인정학점 확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요건에 추가할 학점 저장 → 증빙자료 업로드
③ 학위수여요건 심사 대기
심사검토 완료 시 학습자 연락처로 문자 발송 → 승인여부 확인
④ [발급가능] 시 학위신청 후,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발급
* [발급불가] 시 '신청결과'에서 불가사유 확인

※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발급기준 충족 시 10일 이내에 발급됨.
※ 본 시스템은 학습자가 직접 선택/입력한 학점을 토대로 발급되므로 학습자의 오입력으로 발생하는 사항은 학습자 귀책사유임.

Q6.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 10일 이후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으로 수강을 시작한 과목의 교육비납입증명서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대학에서 발급이 가능).
※ 2017년 3월 9일 이전에 개강한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급이 가능함.

Q7. 2021년도 전기 A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합니까?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 후 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성적증명서는 해당 대학에서 학습자의 성적을 이관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Q8. 온라인학습설계 상담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합니까?

온라인학습설계 시스템이란 개별 학습자가 보유학점에 대한 학점인정 '예상' 결과를 확인하고,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에 맞는 학점이수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시스템입니다. 본 시스템을 통해 부족한 학점 등 학점은행제 이용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 → 자료실] 536번 '온라인 학습설계상담 매뉴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학습설계 접속 방법**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 학습지원 – [온라인 학습설계]

Q9. 학점은행제 관련 방문상담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방문하는 학습자들의 상담 대기시간을 단축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보다 효율적인 상담운영을 위해 2010년 2월 16일부터 방문상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설계 등을 목적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예약한 시간 5분 전까지 도착해야만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 시작 시간에서 15분을 초과하여 도착할 경우 상담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기 바랍니다.

Q10. 방문상담 예약은 어떻게 합니까?

학점은행 방문상담 예약은 [홈페이지 → 학습지원 → 방문상담 →예약] 에서 방문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1인당 상담시간은 30분이며, 한정된 시간에 상담이 이루어지므로 학습설계 상담 시 희망전공은 1개 전공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보다 많은 학습자들이 방문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예약상담 가능 횟수는 주1회, 월2회로 제한합니다. 원활한 상담실 운영과 방문상담 예약제 정착을 위해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신 학습자는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점인정신청기간 및 학위수여업무처리기간 등에 따라 방문상담 예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1.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군복무 입영기일 연기가 가능합니까?

2011년 7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이 개정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 입영기일 제도를 신설·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군복무에 따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고졸 학력자(전문대학/대학교 제적생 불가)로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인정학습과정을 출석수업 형태로 수강 중인 학습자입니다(온라인 학습과목만으로 수강 중인 학습자 제외). 출석수업 기반의 평가인정학습과정을 1개 이상 수강하고 있는 학습자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통상 2년의 입영기일 연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입영기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습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입영기일연기·포기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처리 및 결과는 지방병무청에서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학점취득사실, 수강여부 등을 확인한 후 통보됩니다.
※ 관련 문의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4)

Q12.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정부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학습자 본인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 자녀일 경우에만 학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국가유공자입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등록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합니까?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하여 면제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 범위 등) 관련 문의: 국가보훈처 ☎ 1577-0606

Ⅵ

부 록

1. 각종 증빙서류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예시
2. 학점은행제 관련 통계
3.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조직도

● ● ●

Ⅵ
부 록

01 각종 증빙서류 및 학점은행제 증명서 예시

가. 최종학력 증빙서류

1-1)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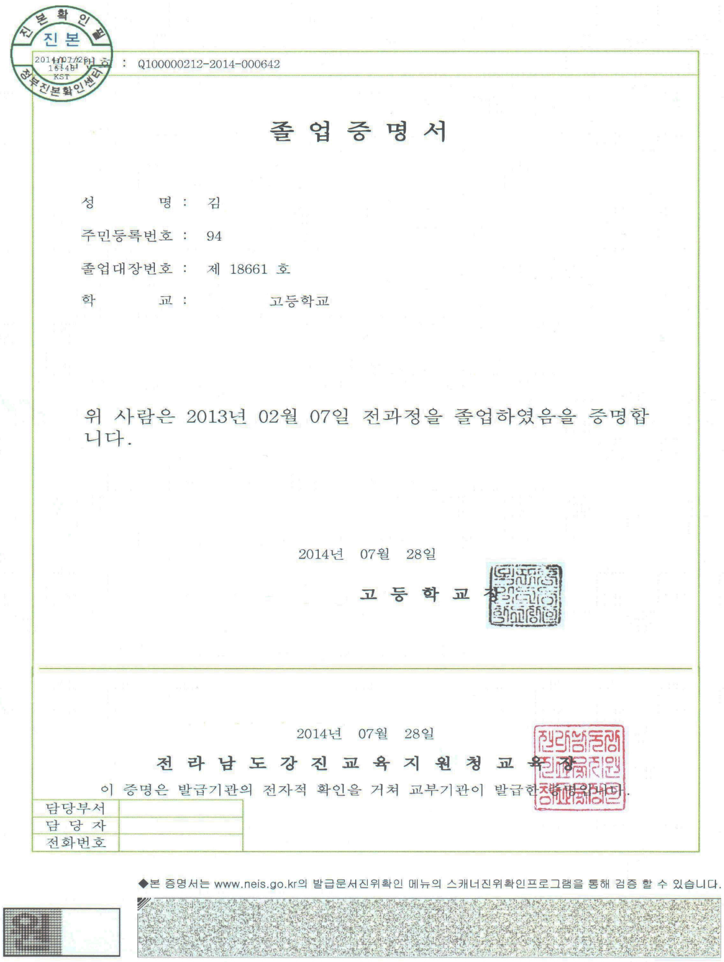
진본확인필
진본
2014/07/28
정부진본확인센터

호 : Q100000212-2014-000642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김

주민등록번호 : 94

졸업대장번호 : 제 18661 호

학　　　교 : 　　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3년 02월 07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년 07월 28일

고 등 학 교 장

2014년 07월 28일

전 라 남 도 강 진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 증명은 발급기관의 전자적 확인을 거쳐 교부기관이 발급한 것입니다.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본 증명서는 www.neis.go.kr의 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의 스캐너진위확인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할 수 있습니다.

1-2)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2341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안

주민등록번호　: 94

졸업대장번호　: 제 3202 호

위 사람은 2013 년 2 월 8 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4 년 7 월 18 일

고등학교장

담당부서	행 정 실
담 당 자	
연 락 처	

2) 검정고시 합격자

E100000001-2015- 호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합격증번호 제 2014-2-3-E10- 호

성 명 : 이검정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951020-

이름, 주민등록번호, 고졸 졸업 학력 확인

위 사람은 2014년 08월 25일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검 정 고 시 위 원 회 위 원 장

2015년 3월 26일

중 학 교 장

이 증명은 발급기관의 전자적 확인을 거쳐 교부기관이 발급한 증명입니다.

담당부서	중학교
담 당 자	
전화번호	032-

◆본 증명서는 www.neis.go.kr의 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의 스캐너진위확인프로그램을 통해 검증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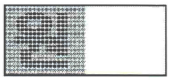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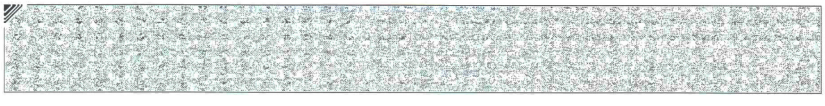

3) 전문대학 중퇴자 (제적증명서)

제 2015-0010 호

제 적 증 명 서

성 명 : 이평생

생년월일 : 1989년 03월 18일

학 과 : 식품조리과

입학일자 : 2007년 03월 02일

제적일자 : 2009년 02월 16일

제적사유 : 자퇴

제적일자 확인

위 의 사 실 을 증 명 함

2015년 4월 7일

대 학 교 교 무 처

• 제출용은 반드시 칼라프린터를 사용할것. (적인인영)

[인터넷 발급]우리 대학 및 www.certpia.com 원본대조메뉴에서 인터넷 발급번호로 입력(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스마트폰 원본대조앱으로 증명서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원본대조 확인 가능. 스마트 원본대조앱은 앱스토어/마켓에서 원본대조로 검색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Internet no) 3332753458523819

위·변조방지용 원본대조코드 특허10-1039390

4) 전문대학 졸업자 (96년 이전: 학위등록번호 기재 안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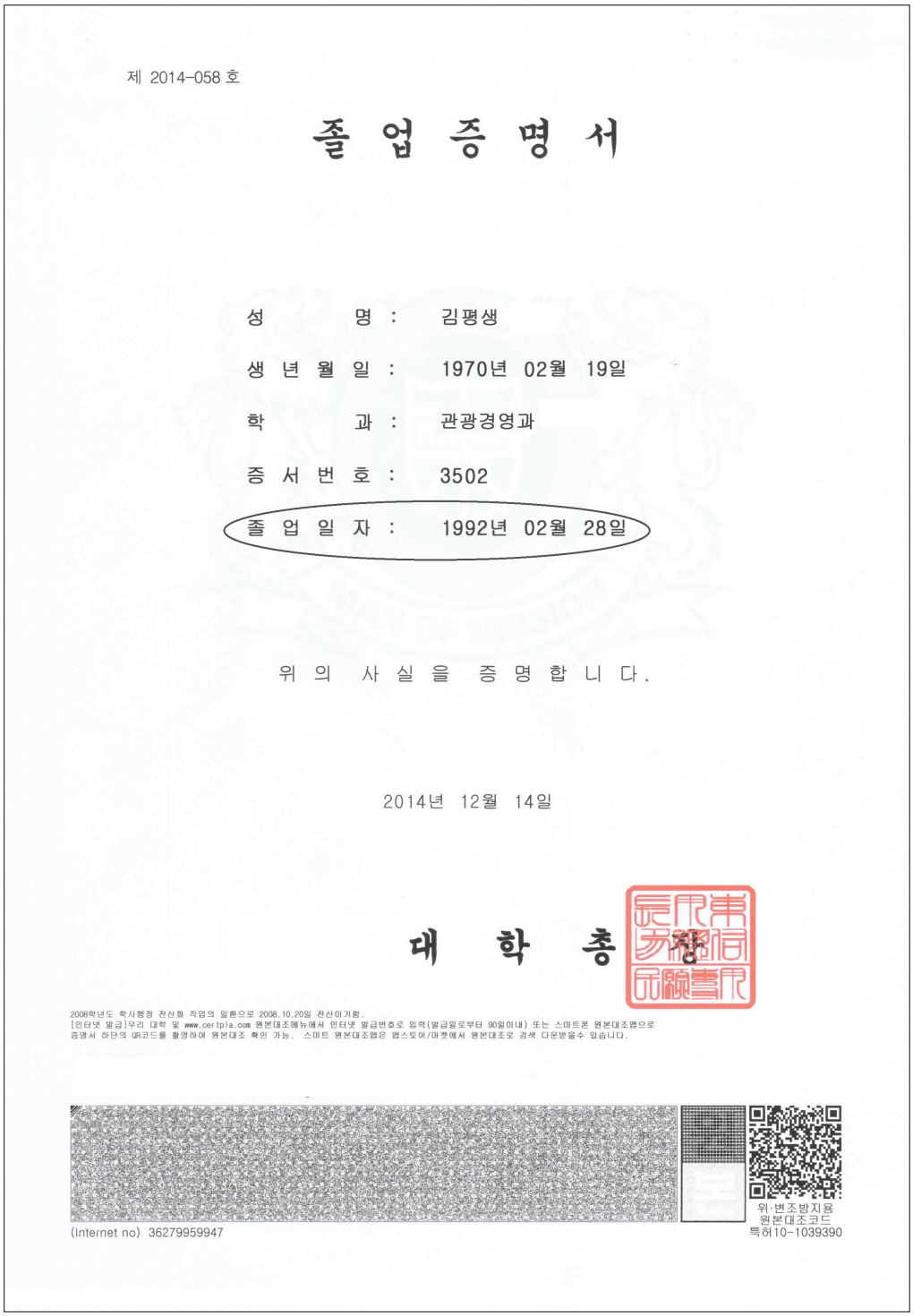

제 2014-058 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김평생

생 년 월 일 : 1970년 02월 19일

학 과 : 관광경영과

증 서 번 호 : 3502

졸 업 일 자 : 1992년 02월 28일

위 의 사 실 을 증 명 합 니 다.

2014년 12월 14일

대 학 총 장

2008학년도 학사행정 전산화 작업의 일환으로 2008.10.20일 전산이기함.
[인터넷 발급]우리 대학 및 www.certpia.com 원본대조메뉴에서 인터넷 발급번호로 입력(발급일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스마트폰 원본대조앱으로
증명서 하단의 QR코드를 촬영하여 원본대조 확인 가능. 스마트 원본대조앱은 앱스토어/마켓에서 원본대조로 검색 다운받을수 있습니다.

(Internet no) 36279959947

위·변조방지용
원본대조코드
특허10-1039390

5) 전문대학 졸업자 (96년 이후: 학위등록번호 기재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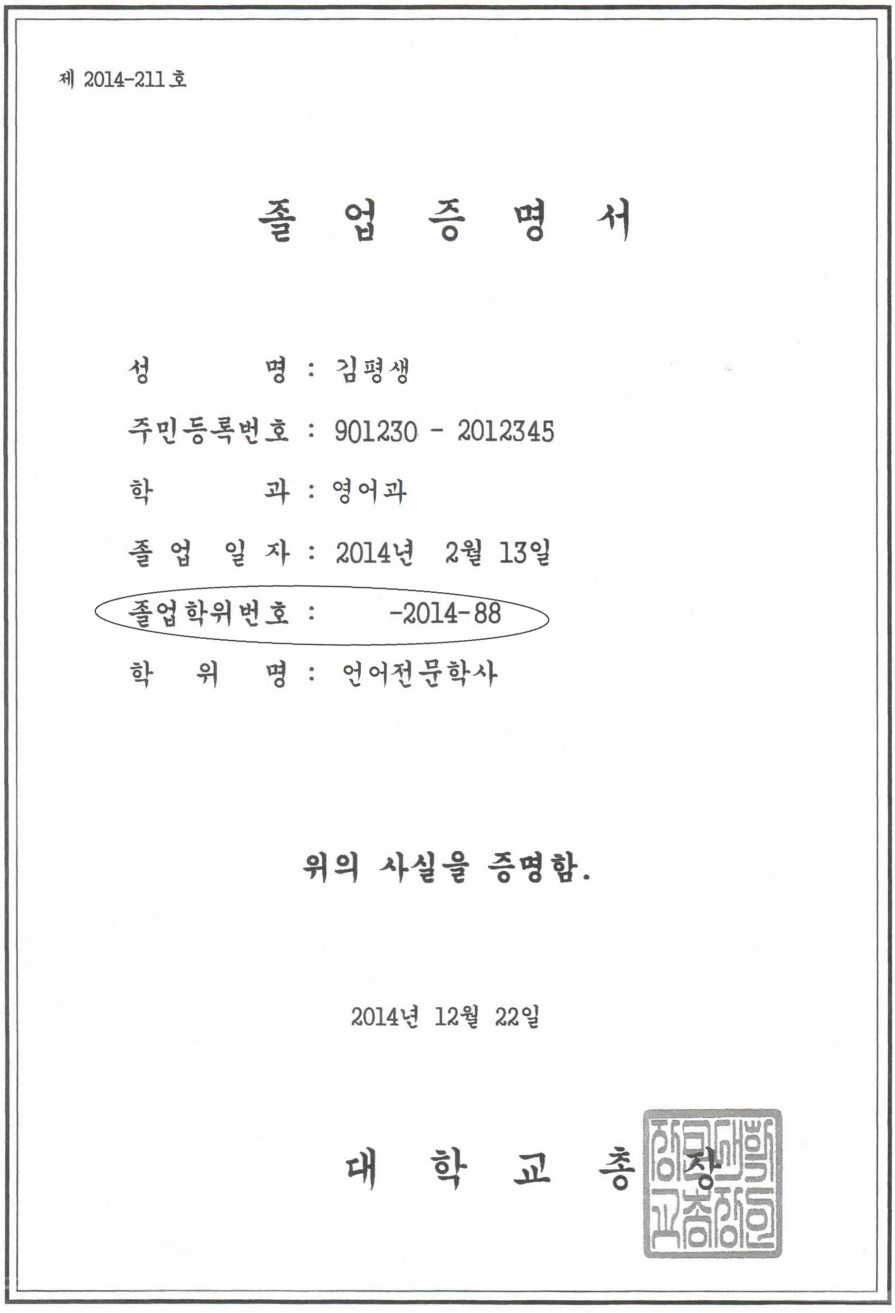

제 2014-211 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김평생

주민등록번호 : 901230 - 2012345

학　　과 : 영어과

졸 업 일 자 : 2014년 2월 13일

졸업학위번호 : -2014-88

학 위 명 : 언어전문학사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4년 12월 22일

대 학 교 총 장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한 문서로 www.webminwon.com에서 24시간 원본대조 확인이 가능합니다.

6) 대학 제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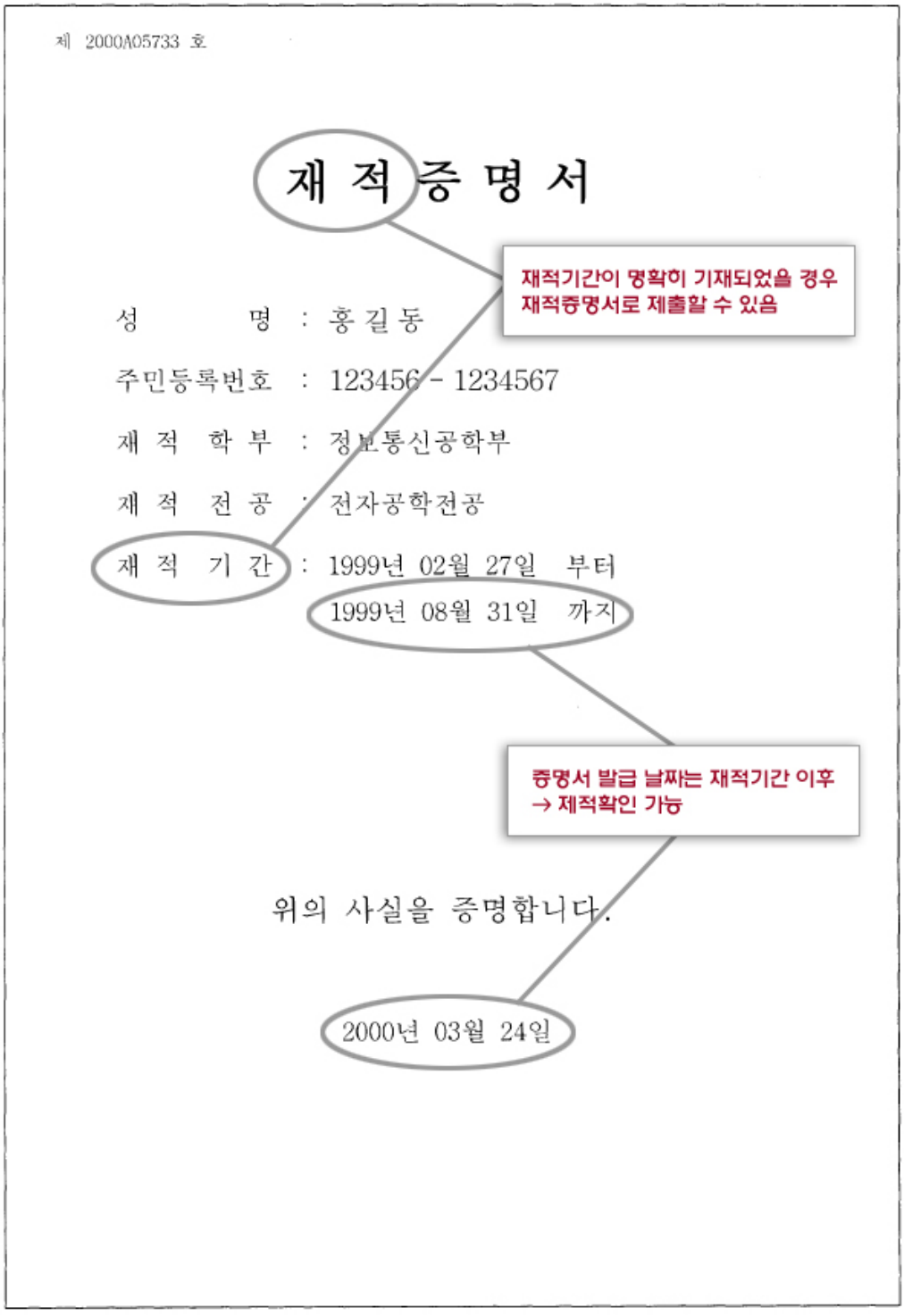
제 2000A05733 호
재 적 증 명 서
재적기간이 명확히 기재되었을 경우
재적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음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123456 - 1234567
재 적 학 부 : 정보통신공학부
재 적 전 공 : 전자공학전공
재 적 기 간 : 1999년 02월 27일 부터
1999년 08월 31일 까지
증명서 발급 날짜는 재적기간 이후
→ 제적확인 가능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00년 03월 24일

7) 대학 졸업자

제 309 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이평생
생 년 월 일	1991년 10월 03일
대 학	글로벌경영대학
학부/과 (전공)	관광경영학과
학 위 명	관광경영학사
입 학 일 자	2011 년 03 월 01 일
졸 업 일 자	2015 년 02 월 12 일
학위 등록 번호	2014(학)2103
졸업 증서 번호	48115

이름, 생년월일,
학과, 학위 확인

위 의 사 실 을 증 명 함.

2015 년 04 월 03 일

대 학 교 총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 되었으며, 해당 대학 및 www.certpia.com에서 원본대조 메뉴를 통해 발급번호로 원본문서를 확인 또는 증명서 하단의 바코드로 증명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단, 증명서 발급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 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Internet no) 383910800620

8) 각종학교 졸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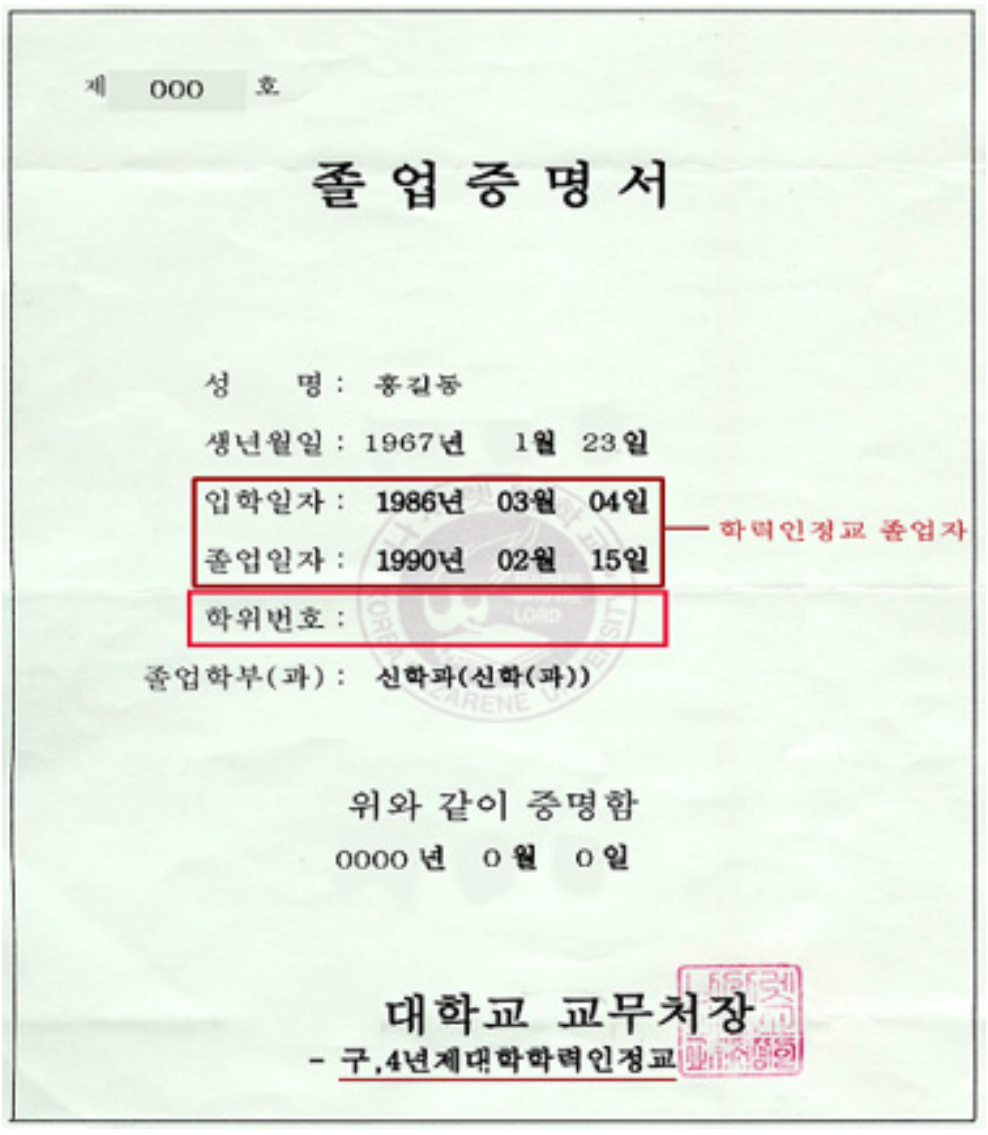
제 000 호

졸 업 증 명 서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67년 1월 23일

입학일자 : 1986년 03월 04일

졸업일자 : 1990년 02월 15일

학력인정교 졸업자

학위번호 :

졸업학부(과) : 신학과(신학(과))

위와 같이 증명함

0000 년 0 월 0 일

대학교 교무처장

- 구.4년제대학학력인정교

※ 입학 또는 졸업일자를 통해 학력인정 가능 시기인지 확인

※ 각종학교는 학위수여가 불가하므로, 학위번호 기재 안 됨.

나. 간호·보건계열 학습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1) 간호 및 보건 면허(자격)증명서

문서확인번호: 1234-5678-9101-1121

임상병리사 면허 증명서

성 명	이평생	생년월일	1986년 12월 19일
면허종별	임상병리사	면허,자격 번호	123456
면허, 자격 취득 년월일	2011년 01월 14일	면허, 자격 갱신 년월일	해당 없음
기 타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15년 04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민원24(minwon.go.kr)의 인터넷발급문서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또한 문서하단의 바코드로도 진위확인(스캐너용 문서확인프로그램 설치)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면허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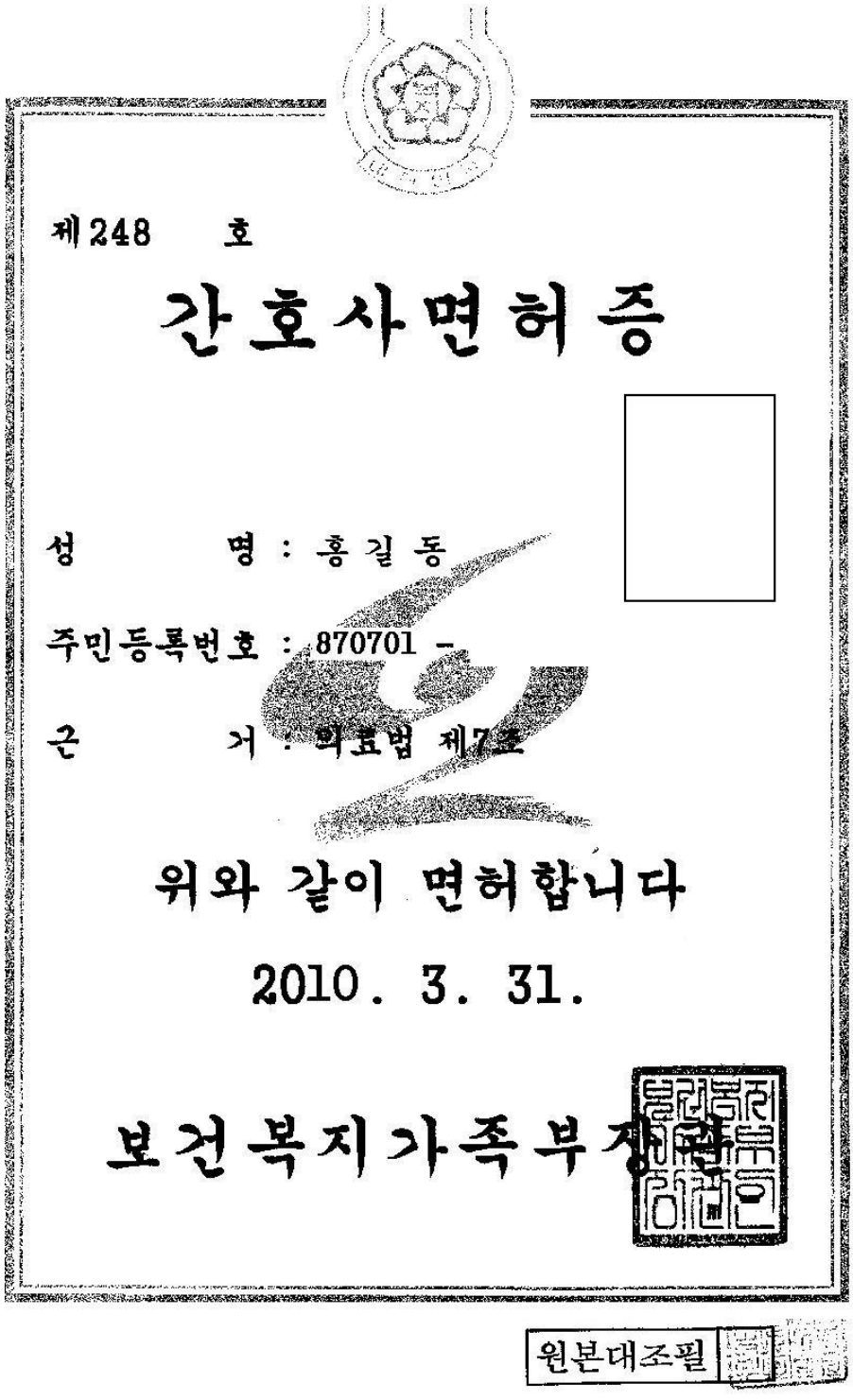

제 248 호

간호사면허증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870701 -

근 거 : 의료법 제7조

위와 같이 면허합니다

2010. 3.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원본대조필

다.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증빙서류

1) 출입국사실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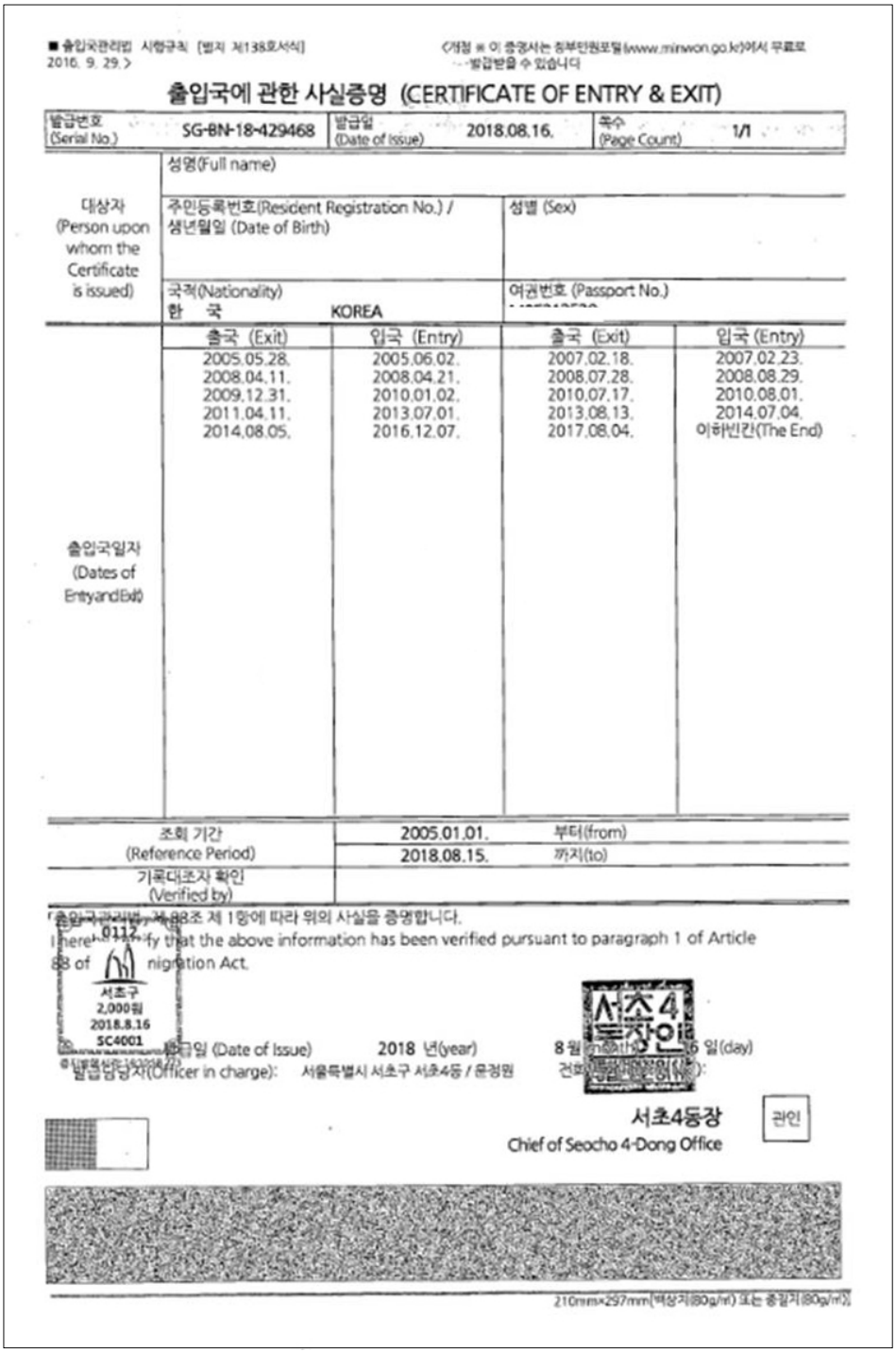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개정 ※ 이 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6. 9. 29.>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CERTIFICATE OF ENTRY & EXIT)

발급번호 (Serial No.)	SG-8N-18-429468	발급일 (Date of Issue)	2018.08.16.	쪽수 (Page Count)	1/1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성명(Full name)			
	주민등록번호(Resident Registration No.) / 생년월일 (Date of Birth)		성별 (Sex)	
	국적(Nationality) 한 국 KOREA		여권번호 (Passport No.)	

출입국일자 (Dates of Entry and Exit)	출국 (Exit)	입국 (Entry)	출국 (Exit)	입국 (Entry)
	2005.05.28.	2005.06.02.	2007.02.18.	2007.02.23.
	2008.04.11.	2008.04.21.	2008.07.28.	2008.08.29.
	2009.12.31.	2010.01.02.	2010.07.17.	2010.08.01.
	2011.04.11.	2013.07.01.	2013.08.13.	2014.07.04.
	2014.08.05.	2016.12.07.	2017.08.04.	이하빈칸(The End)

조회 기간 (Reference Period)	2005.01.01.	부터(from)
	2018.08.15.	까지(to)
기록대조자 확인 (Verified by)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information has been verifi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88 of the Immigration Act.

서초구 2,000원 2018.8.16 SC4001

발급일 (Date of Issue) 2018 년(year) 8월 month 16 일(day)

발급담당자(Officer in charge):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 문정원

서초4동장인

서초4동장
Chief of Seocho 4-Dong Office

관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3)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6. 9. 29>
※ 이 증명서는 정부민원포털(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발급번호 Serial No.	AA-8Z-19-000785	발급일 Date of Issue	2019-05-27	현재등록자

대상자 (Person upon whom the Certificate is issued)	국내거소신고번호 (Report No.)	국내거소신고일 (Date of Report)
	성명 (Full name)	
	성별(Sex)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 미국	체류기간 (Period of Sojourn)
	본인이 신고한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Expired Resident Registration No.)	
	이전의 외국인등록번호(Expired Alien Registration No.)	

	변경일 (Date)	국내거소 (Residential Address in Korea)	신고일 (Date of Report)	비고 (Remarks)
거소이전사항 (Alteration of Residence)	2018.04.27	"이하 빈 칸"	2018.04.27	현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o the above facts in wri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Act on the Immigration and Legal Status of Overseas Koreans.

발급일 (Date of Issue) 2019 년(year) 5 월(month) 27 일(day)

발급담당자(Officer in charge): 종로구 / 박영은 전화번호(Phone No.):

종로구 2,000원 2019.5.27 JNM005

종로구청장인 민원사무전용

종로구청장
Chief Jongno-Gu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 아포스티유확인서(고졸, 대졸): 미국

STATE OF NORTH CAROLINA

Department of The Secretary of State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5 octobre 1961)

1. COUNTRY: **UNITED STATES OF AMERICA**
2. This Public Document has been signed by RAJESH B. PATEL
3. acting in the capacity of NOTARY PUBLIC
   COMMISSION EXPIRES 4/20/2013
4. bears the seal/stamp of COUNTY OF GASTON, NORTH CAROLINA

CERTIFIED

5. at Raleigh, North Carolina
6. the 29TH DAY OF JANUARY, 2009
7. by Secretary of State or Deputy Secretary of State, State of North Carolina
8. No. 1623
9. Seal/Stamp
10. Signature

By: Haley Haynes
Deputy Secretary of State

Elaine F. Marshall
Secretary of State

5) 학력인정확인서(대졸):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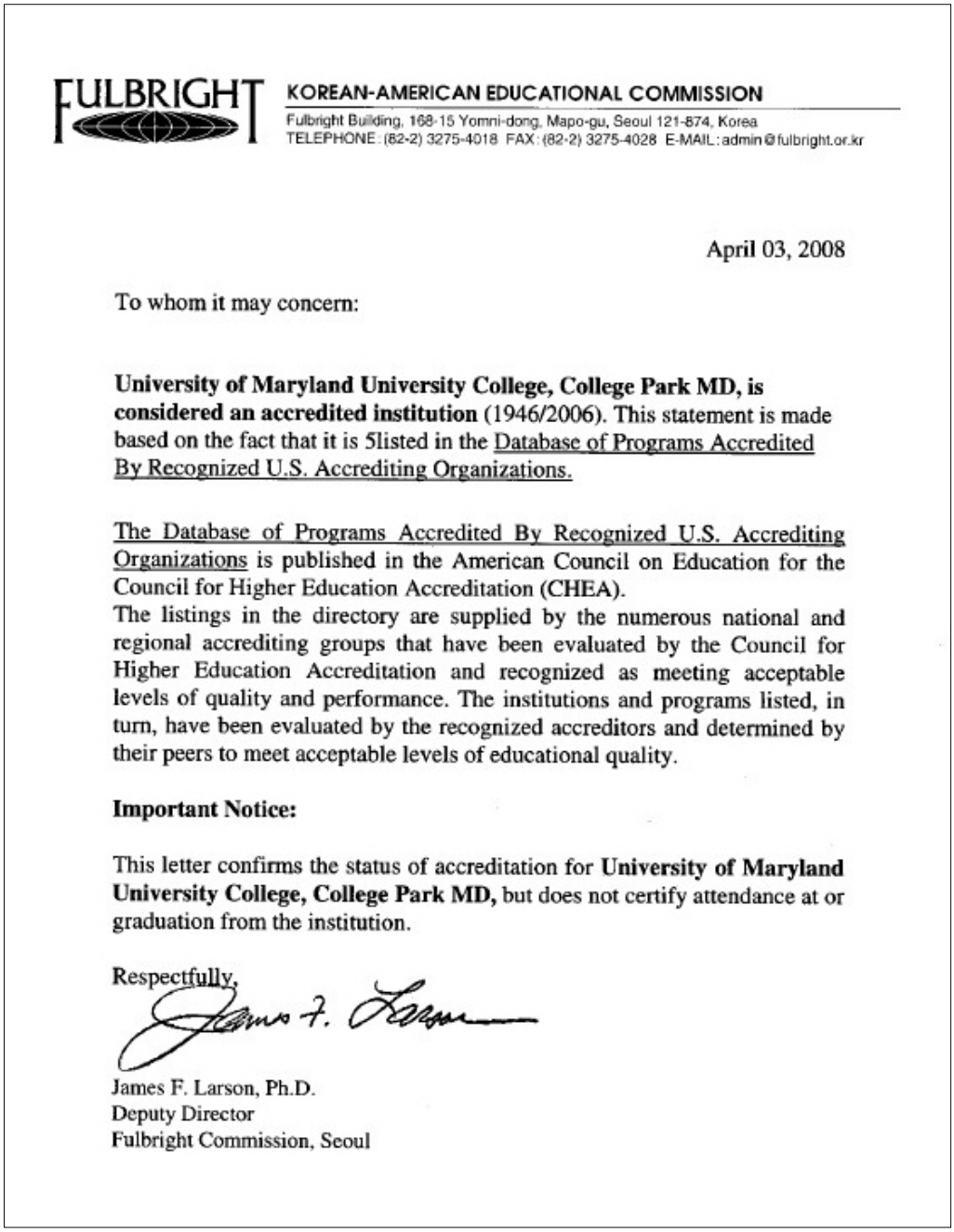

FULBRIGHT

KOREAN-AMERICAN EDUCATIONAL COMMISSION

Fulbright Building, 168-15 Yomni-dong, Mapo-gu, Seoul 121-874, Korea
TELEPHONE : (82-2) 3275-4018 FAX : (82-2) 3275-4028 E-MAIL : admin@fulbright.or.kr

April 03, 2008

To whom it may concern: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College Park MD, is considered an accredited institution (1946/2006). This statement is made based on the fact that it is 5listed in the Database of Programs Accredited By Recognized U.S. Accrediting Organizations.

The Database of Programs Accredited By Recognized U.S. Accrediting Organizations is published in the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for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CHEA).
The listings in the directory are supplied by the numerous national and regional accrediting groups that have been evaluated by the 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 and recognized as meeting acceptable levels of quality and performance. The institutions and programs listed, in turn, have been evaluated by the recognized accreditors and determined by their peers to meet acceptable levels of educational quality.

Important Notice:

This letter confirms the status of accreditation for **University of Maryland University College, College Park MD,** but does not certify attendance at or graduation from the institution.

Respectfully,

James F. Larson, Ph.D.
Deputy Director
Fulbright Commission, Seoul

※ 미국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가능함. 2020.10.1 기준 본 서류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발급 하지 않음. 기존 발급자 학력인정확인서로 제출 가능함.

6) 학력인정확인서(고졸, 대졸): 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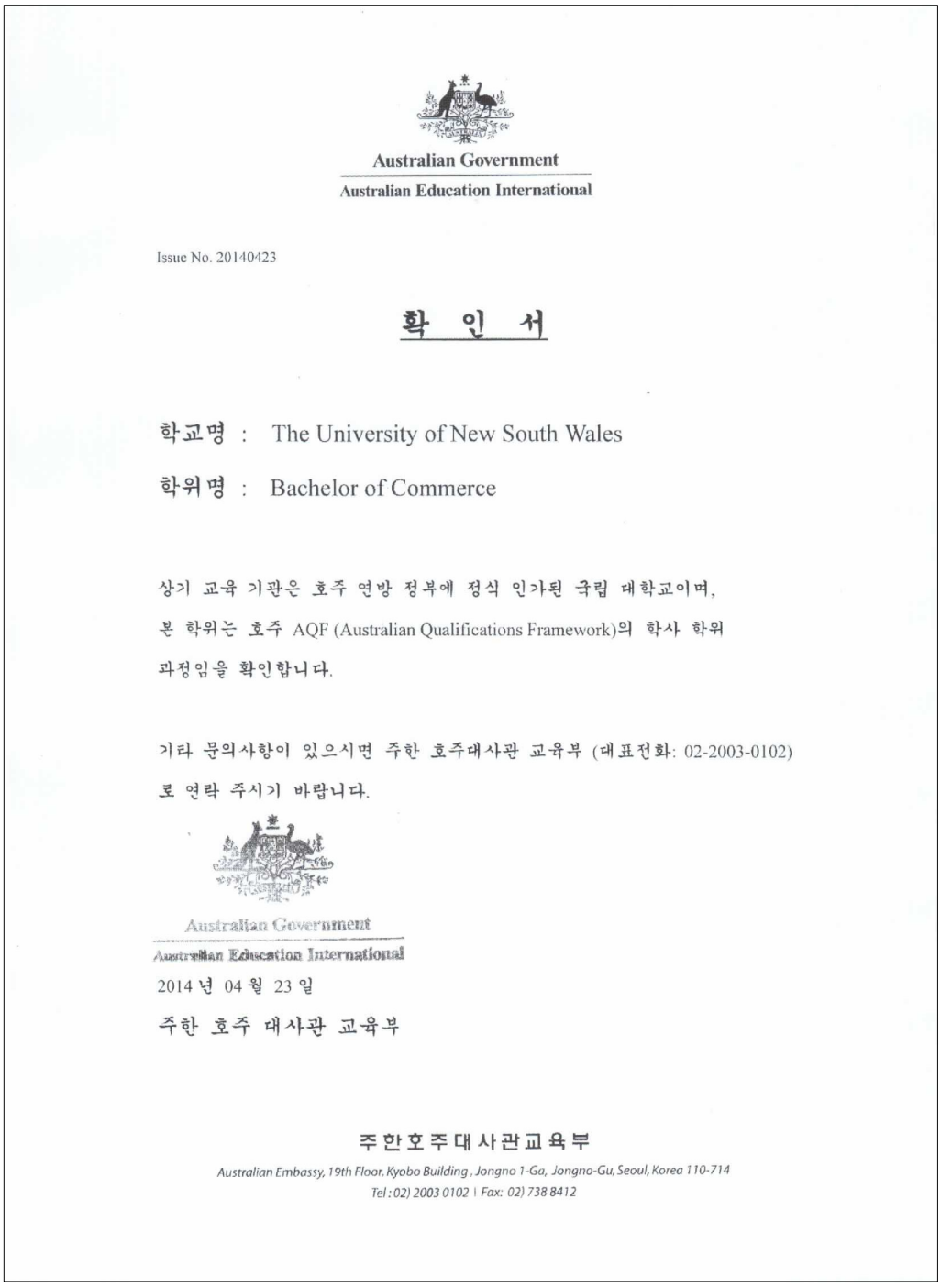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Issue No. 20140423

확 인 서

학교명 :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학위명 : Bachelor of Commerce

상기 교육 기관은 호주 연방 정부에 정식 인가된 국립 대학교이며,
본 학위는 호주 AQF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의 학사 학위
과정임을 확인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한 호주대사관 교육부 (대표전화: 02-2003-0102)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n Education International
2014 년 04 월 23 일
주한 호주 대사관 교육부

주한호주대사관교육부
Australian Embassy, 19th Floor, Kyobo Building , Jongno 1-Ga, Jongno-Gu, Seoul, Korea 110-714
Tel : 02) 2003 0102 I Fax: 02) 738 8412

※ 주한호주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함.

7) 학력인정확인서(고졸, 전문대졸, 대졸):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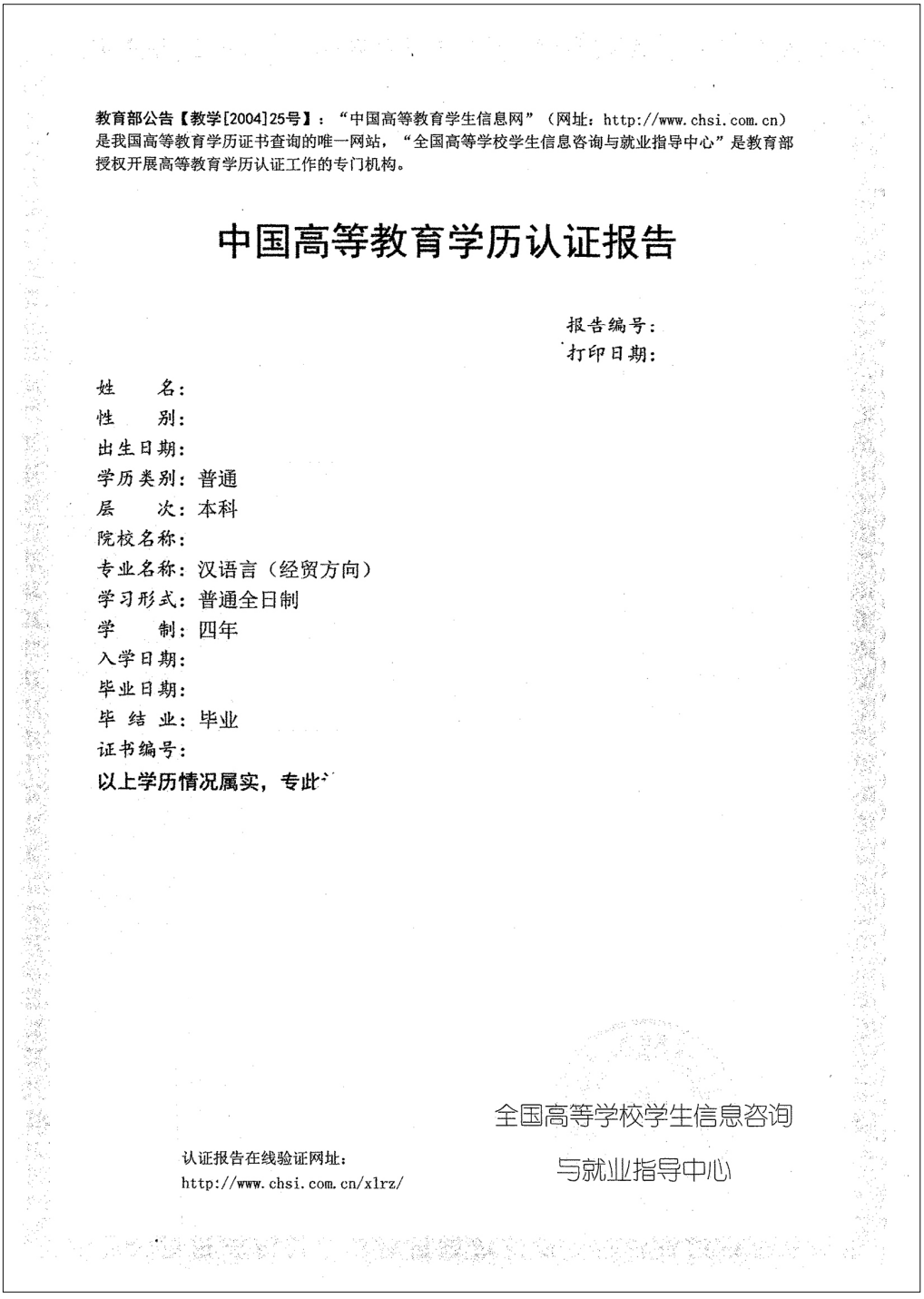

教育部公告【教学[2004]25号】："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网址：http://www.chsi.com.cn）是我国高等教育学历证书查询的唯一网站，"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与就业指导中心"是教育部授权开展高等教育学历认证工作的专门机构。

中国高等教育学历认证报告

报告编号：
打印日期：

姓　　名：
性　　别：
出生日期：
学历类别：普通
层　　次：本科
院校名称：
专业名称：汉语言（经贸方向）
学习形式：普通全日制
学　　制：四年
入学日期：
毕业日期：
毕 结 业：毕业
证书编号：
以上学历情况属实，专此

全国高等学校学生信息咨询
与就业指导中心

认证报告在线验证网址：
http://www.chsi.com.cn/xlrz/

※ 중국교육부 "전국고등학교학생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학위 및 연구생교육발전중심", "서울공자아카데미"에서 대행 발급 가능함.

8) 학력인정확인서(고졸, 전문대졸, 대졸): 일본

'Y- 1-24; 5:57PM; # 1/ 2

文化証第 0 06 - 000150 号

EMBASSY OF JAPAN · REPUBLIC OF KOREA 駐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証明書

別添書類의 印章은 東京国際大学学長 의 印章임을 証明함.

서울, 2006年 4 月 25日

EMBASSY OF JAPAN · REPUBLIC OF KOREA 駐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K. Koguchi

1等書記官 越口和幸

駐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

(手数料16000원)

1/2

※ 주한일본대사관에서 발급 가능함.

※ 일본대사관의 경우 인장증명서에 인장증명이 된 경우에는 일본 학교교육법 제1조에 의거하여 정규교육기관임을 확인해주고 있음.

※ 단, 전문사 칭호에 발행되는 '학력인정에 관한 의견서'는 학력인정확인서로 인정 불가함.

9)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증명서

발행번호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09

학 력 인 정 증 명 서

성 명		사진	
주 소	대구시 동구 율하동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규정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등학교)학교 (3)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음을 인정함.

2009 년 8 월 28 일

대구광역시교육감 위임을 받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장

대 구 광 역 시 교

※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력까지만 확인이 가능함.

10)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관련 증명자료(통일부 공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통 일 부

수신자 귀하
(경유)
제목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귀하께서 신청하신 재북 학력에 대하여 교육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학력인정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 명	학력인정 사항
	우리나라 전문대학(2년제)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 관련규정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13조(학력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학력인정 기준 및 절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

붙임 교육부 대학원지원과-7198(2014.11.27) 학력인정 공문 등 1부(별도송부). 끝.

통 일 부 장 관

전결 11/28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정착지원과-3499 (2014. 11. 28.)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 http://www.unikorea.go.kr
전화 02-2100-5784 전송 02-2100-5929 / ssk001@unikorea.go.kr / 비공개(6)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으로 통일부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어갑니다.

문서관리카드정착지원과-3499 1/1

※ 공문에 첨부된 붙임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함.

라. 기타

1) 국가무형문화재 별지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15.10.20.〉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학습구분	종목명	등급구분	인증기관명	학점

※ 학습구분은 전필(전공필수), 일선(일반선택)으로 구분하여 기재

※ 등급구분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 교육 조교, 이수증 발급자(이수자),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로 구분하고, 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의 경우 하단의 전수 교육 확인서를 같이 제출

전수 교육 확인서[전수 교육 이수자(전수생)만 작성]

인적사항	성 명	이평생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56.7.16
전수 교육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종 목 명	경기민요		

전수 교육 사항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단체명
	경기민요	2015.1.1 ~ 2015.7.31	국가무형문화재 57호 경기민요협회
		~	
		~	
		~	
		~	
		~	

위 학습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 호의 전수 교육을 해당 기간 동안 전수받았음을 증명합니다.

2016 년 7 월 4 일

국가무형문화재 제 57 호 보유자 (서명 또는 인)

(보유단체 대표) 홍길동 (서명 또는 인)

※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나 명장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님

210mm×297mm[백상지 80g/㎡]

2)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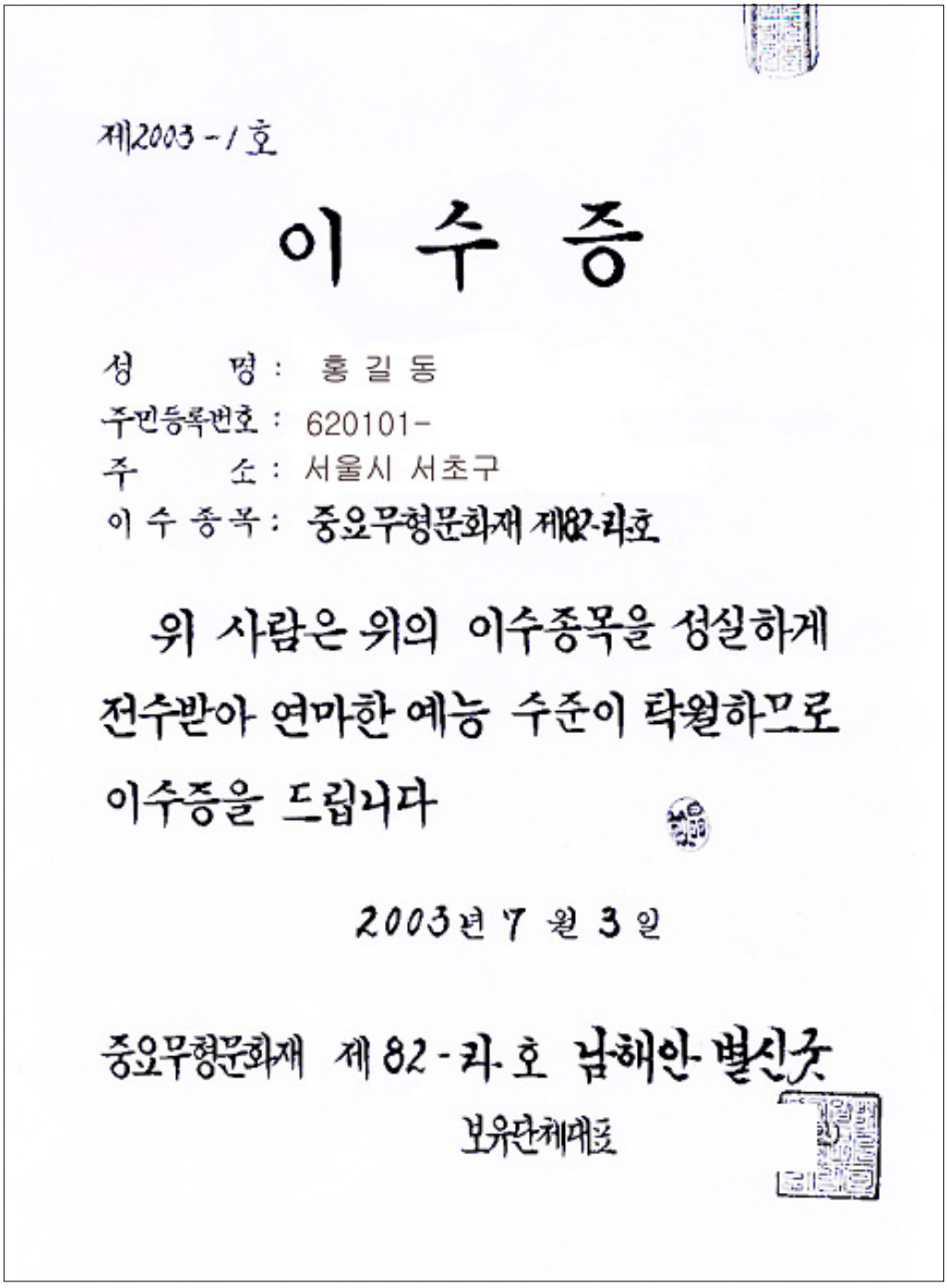

제2003-1호

이 수 증

성　　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620101-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이 수 종 목 : 중요무형문화재 제82-라호

위 사람은 위의 이수종목을 성실하게
전수받아 연마한 예능 수준이 탁월하므로
이수증을 드립니다

2003년 7 월 3 일

중요무형문화재 제 82-라 호 남해안 별신굿
보유단체대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 20120000000011748549 호

수 급 자 증 명 서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930427 - *******
주 소 (소재지)			
세대주성명 (시설명)	홍 두 깨	세대주와의 관계	자
수급자구분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제출용도	용 도	
	제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2012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마. 학점은행제 증명서

1) 학위증명서(국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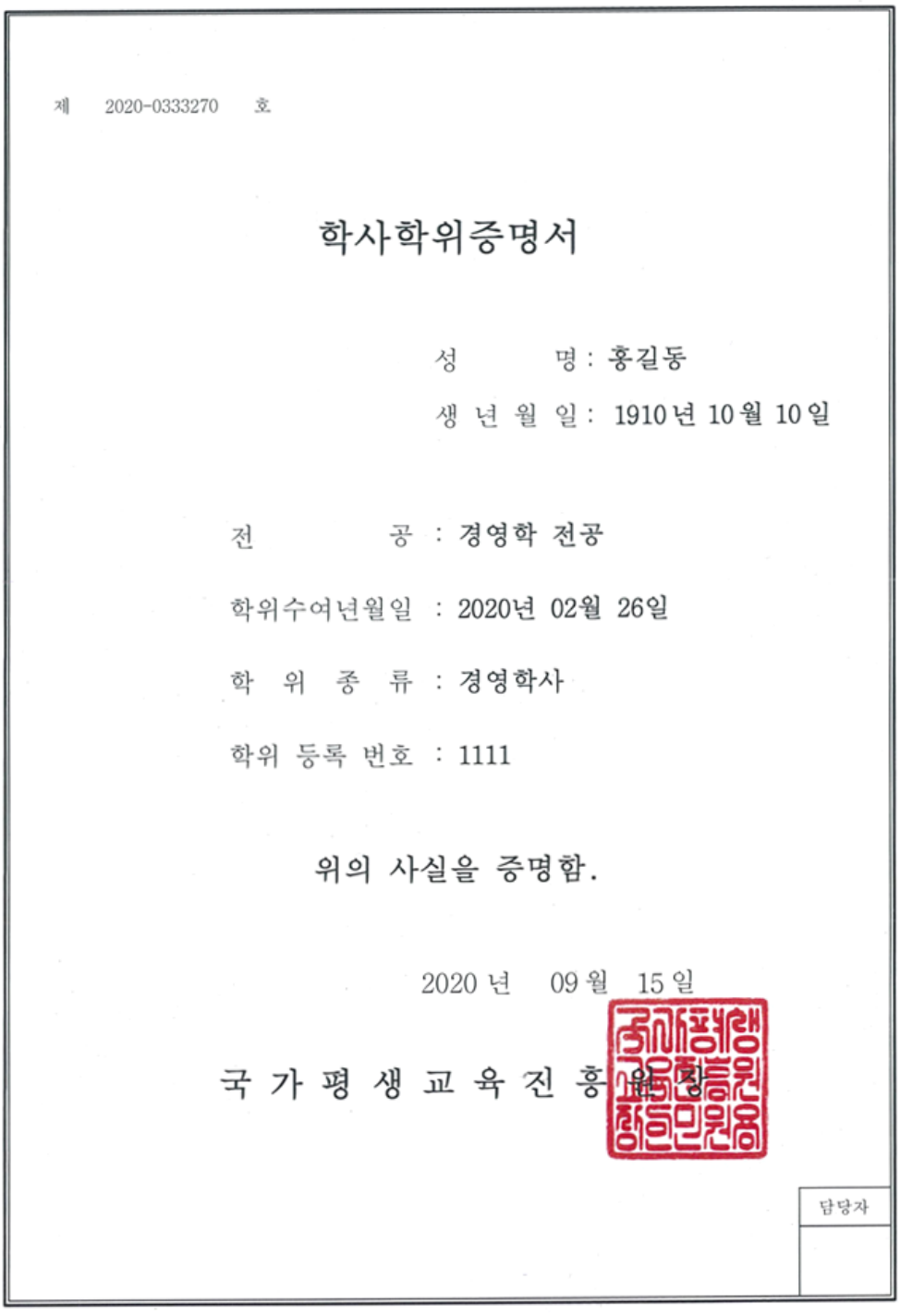

제 2020-0333270 호

학사학위증명서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10년 10월 10일

전 공 : 경영학 전공

학위수여년월일 : 2020년 02월 26일

학 위 종 류 : 경영학사

학위 등록 번호 : 1111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0 년 09 월 15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담당자

2) 학위증명서(영문)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Serial No. 2020-0333271 Date Issued: September 15, 2020

Certificate of Bachelor's Degree

Name in Full:	**hong gil dong**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Sex:	Male
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Date to be Conferred:	February 26, 2020
Degree to be Conferred: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received the above mentioned degree on February 26, 2020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Certificate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3) 학위수여예정증명서(국문)

제 2020-0339461 호

학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성 명 : 홍길동

생 년 월 일 : 1910년 10월 10일

전 공 : 경영학 전공

학위수여예정년월 : 2021년 2월

학 위 종 류 : 경영학사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20 년 09 월 15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담당자

4) 학위수여예정증명서(영문)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Serial No. 2020-0339465 Date Issued : September 15, 2020

Certificate of Degree Expected

Name in Full:	hong gil dong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Sex:	Male
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Expected Date to be Conferred:	February, 2021
Degree to be Conferred: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is expected to receive the above mentioned degree on February, 2021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Certificate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5) 성적증명서(국문)

제 2020-0333275 호

성 적 증 명 서

학번(주민등록번호)	2000-0004211 (101010-*******)	성 명	홍길동
전 공	경영학	학 위 종 류	경영학사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
	교육훈련기관 : 백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교양	유아교육개론	78	2	2002-06
교양	음악과생활	81	2	2002-12
교양	행정학의기초	85	3	2002-12
교양	서양문화사	87	3	2003-06
교양	청소년지도론	83	2	2003-12
교양	현대사회의 이해	92	2	2003-12
교양	가족학	90	3	2003-12
전선	심리학개론	91	3	2002-06
	교육훈련기관 : 백석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일선	반주법	87	3	2002-07
일선	전공실기I	90	3	2002-07
일선	합창	86	3	2002-07
일선	시창청음I	75	3	2002-12
일선	전공실기II	88	3	2002-12
일선	화성학	70	3	2002-12
일선	시창·청음II	79	3	2003-07
일선	음악분석	82	3	2003-07
일선	전공실기III	76	3	2003-07
일선	피아노교수법 I	81	3	2003-07
일선	가창	79	3	2003-12
일선	대위법	86	3	2003-12
일선	악식론	83	3	2003-12
일선	전공실기IV	84	3	2003-12
일선	지휘법	77	3	2003-12
교양	음악사	87	3	2002-07
교양	음악개론	76	3	2002-07
교양	교육학개론	77	3	2002-12
교양	국악개론	88	3	2002-12
교양	음악감상법	91	3	2003-07
	교육훈련기관 :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교양	컴퓨터그래픽	97	3	2000-12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년월
	이수기관 : 서울간호전문대학		
교양	심리학 개론	3	2012-02
	이수기관 : 서울대학교		
일선	TEST!@#	3	2019-06
일선	TEST333	3	2019-06
	이수기관 : 중앙대학교		
일선	세계의정치와경제	3	2006-06
일선	세계의역사	3	2006-06
일선	거리측량	3	2007-06 P
일선	생활속의경제	3	2011-12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
	이수기관 : 남서울대학교			
교양	미술	90	3	2019-06 P
	이수기관 : 서울간호전문대학			
교양	사회가족복지실천기술론	90	3	2019-06 P
	이수기관 : 한국대학교			
교양	생활경제학	80	3	2007-06
교양	아동발달	77	3	2007-12 P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구분	자격증종목및등급	학점	취득년월일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필	정보처리기사1급	30	1999-04-12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구분	시험과목명	학점	합격일
교양	국어	4	2014 P
교양	국사	4	2015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성적	학점	이수년월

이수기관 :

교양	국민윤리	4	2018-08
전선	사회학개론	4	2018-08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구분	종목명	학점	이수년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대학 이수]**********

구분	학습과목명	학점	이수년도

********** 이 하 여 백 **********

인정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30	7	62	63

인정학점총계	162
평점평균	83.53/100.0
평점환산	3.19/4.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학습과목별 성적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20 년 09 월 15 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담당자

6) 성적증명서(영문)

TRANSCRIPT OF ACADEMIC RECORD

Date Issued: September 15, 2020
Serial No.: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Name : **hong gil dong** Date of Birth : October 10, 1910
Major : Business Administration Degree :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Year	Course Title	Grade	Credit
**********	[The Courses Accredited by MOE] **********		
2000	Computer Graphics	97	3
2002	Introduction to Psychology	91	3
2002	Survey of Young Children Education	78	2
2002	Art of Accompanying	87	3
2002	History of Music	87	3
2002	Introduction to Music	76	3
2002	Major Private Instruction I	90	3
2002	Chorus	86	3
2002	Introduction to Education	77	3
2002	Sight Singing & Ear Training I	75	3
2002	Major Private Instruction II	88	3
2002	Harmony	70	3
2002	INTRO to Korean Traditional Music	88	3
2002	Music and Life	81	2
2002	The Found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85	3
2003	History of Western Culture	87	3
2003	Sight Singing & Ear Training II	79	3
2003	Music Appreciation	91	3
2003	Music Analysis	82	3
2003	Major Private Instruction III	76	3
2003	Piano Pedagogy I	81	3
2003	Guidance of Youth	83	2
2003	Understanding Modern Society	92	2
2003	Understanding of Child and Family	90	3
2003	Class Instruction in Voice	79	3
2003	Counterpoint	86	3
2003	Musical Forms	83	3
2003	Major Private Instruction IV	84	3
2003	Conducting	77	3
*******	[Curriculum at a Credit-Recognized School] **********		
2006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3
2006	History of Civilization		3
2007			3 P
2011	Economics in a Life		3
2012			3
2019			3
2019			3
**********	[Part-Time Enrollment] **********		
2007	Practical Economics	80	3
2007	Leadership management	77	3 P
2019	Art	90	3 P
2019		90	3 P
**	[National Certificates or Officially Recognized Private Certificates] **		
1999	Engineer Information Processing		30
********	[Bachelor's Degree Exam for Self-Education] *********		
2014	Korean Language		4 P
2015	Korean History		4
**	[Bachelor's Degree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Courses for Self-Education] **		
2018			4
2018			4 P
**	[Skill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		
**********	END OF RECORD **********		

TOTAL CREDITS EARNED	**162**
Major Requirements	30
Major Electives	7
General Education Courses	62
General Electives	63
Average Grade	**83.53 / 100.0**
G.P.A	**3.19 / 4.5**

Remarks
1. Grade: 100-60 - Passing Grade
59- 0 - No Credits Earned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transcript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7) 학점인정증명서(국문)

제 2020-0333280 호

학 점 인 정 증 명 서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학번)	101010-******* (2000-0004211)
전 공	경영학	학 위 종 류	경영학사

학 점 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계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0	3	35	45	83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30	0	0	0	30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0	0	8	0	8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0	4	4	0	8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0	0	3	18	21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0	0	12	0	1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0	0	0	0	0
합 계	30	7	62	63	162
인정 학점 총계	162 학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인정학점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20 년 09 월 15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담당자

8) 학점인정증명서(영문)

CREDIT BANK SYSTEM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NILE)

14, Cheonggyecheon-ro, Jung-gu, Seoul, Korea.

Serial No.2020-0333277 Date Issued : September 15, 2020

Certificate of Credits Approved

Name in Full: hong gil dong Major: Business Administration

Date of Birth: October 10, 1910 Degree: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Credit Category	Major Requirements	Major Electives	General Education Courses	General Electives	Total
The Courses Accredited by MOE	0	3	35	45	83
National Certificates or Officially Recognized Private Certificates	30	0	0	0	30
Bachelor's Degree Exam for Self-Education	0	0	8	0	8
Bachelor's Degree Exemption from the Examination Courses for Self-Education	0	4	4	0	8
Curriculum at a Credit-Recognized School	0	0	3	18	21
Part-Time Enrollment	0	0	12	0	12
Skills of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0	0	0	0	0
Total	**30**	**7**	**62**	**63**	**162**
Grand Total Credits Approved			**162**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mentioned person has approved the above mentioned credits.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Note: A Certificate is official if it is printed on light blue security paper and if the NILE President's signature is printed in blue..

9) 학점인정증명서(산업인력공단 제출용)

제 2020-0333284 호

학 점 인 정 증 명 서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학번)	101010-******* (2000-0004211)
전 공	경영학	학 위 종 류	경영학사

학 점 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계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0	3	35	45	83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30	0	0	0	30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0	0	8	0	8
독학학위제 시험면제 교육과정 이수	0	4	4	0	8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0	0	3	18	21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0	0	12	0	12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0	0	0	0	0
합 계	30	7	62	63	162
인정 학점 총계	162 학점				

* 최종 학점 인정일 : 2020 년 08 월 22 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인의 인정학점을 위와 같이 증명함.

2020 년 09 월 15 일

국 가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담당자

10)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증 서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5.10.20.〉

제 호

학 위 증

성 명:

생년월일:

전 공: (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직인

학위등록번호 _____

210mm×297mm[백상지 150g/㎡]

02 학점은행제 관련 통계

가. 학습자등록 현황

('21.5 기준 / 단위: 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학사	61,283	56,772	59,338	60,420	60,563	61,740	66,484	69,937	72,416	77,892	99,957	109,101	855,903
전문학사	34,237	39,802	62,087	73,351	83,991	53,721	47,252	46,723	43,026	40,426	50,407	56,227	631,250
계	95,520	96,574	121,425	133,771	144,554	115,461	113,736	116,660	115,442	118,318	150,364	165,328	1,487,153

나. 학위취득자 현황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학사	34,058	28,953	22,769	23,668	24,749	26,525	30,070	31,538	37,889	30,001	32,714	34,812	18,568	376,314
전문학사	14,058	22,408	29,585	37,938	45,024	54,242	27,913	26,525	34,877	21,604	22,373	24,253	16,311	377,111
계	48,116	51,361	52,354	61,606	69,773	80,767	57,983	58,063	72,766	51,605	55,087	59,065	34,879	753,425

* 2021년의 경우 2월(전기) 학위취득자만 반영

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현황(2021년 5월 기준)

기관 유형	수(개)
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94
인정직업훈련원	60
원격교육	85
정부관련기관	35
평생교육시설	18
사회계학원	7
특수학교	6
기술계학원	5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	4
예능계학원	1
공공직업훈련원	1
고등기술학교	1
K-MOOC	11
합 계	428

03 학점은행·독학사관리본부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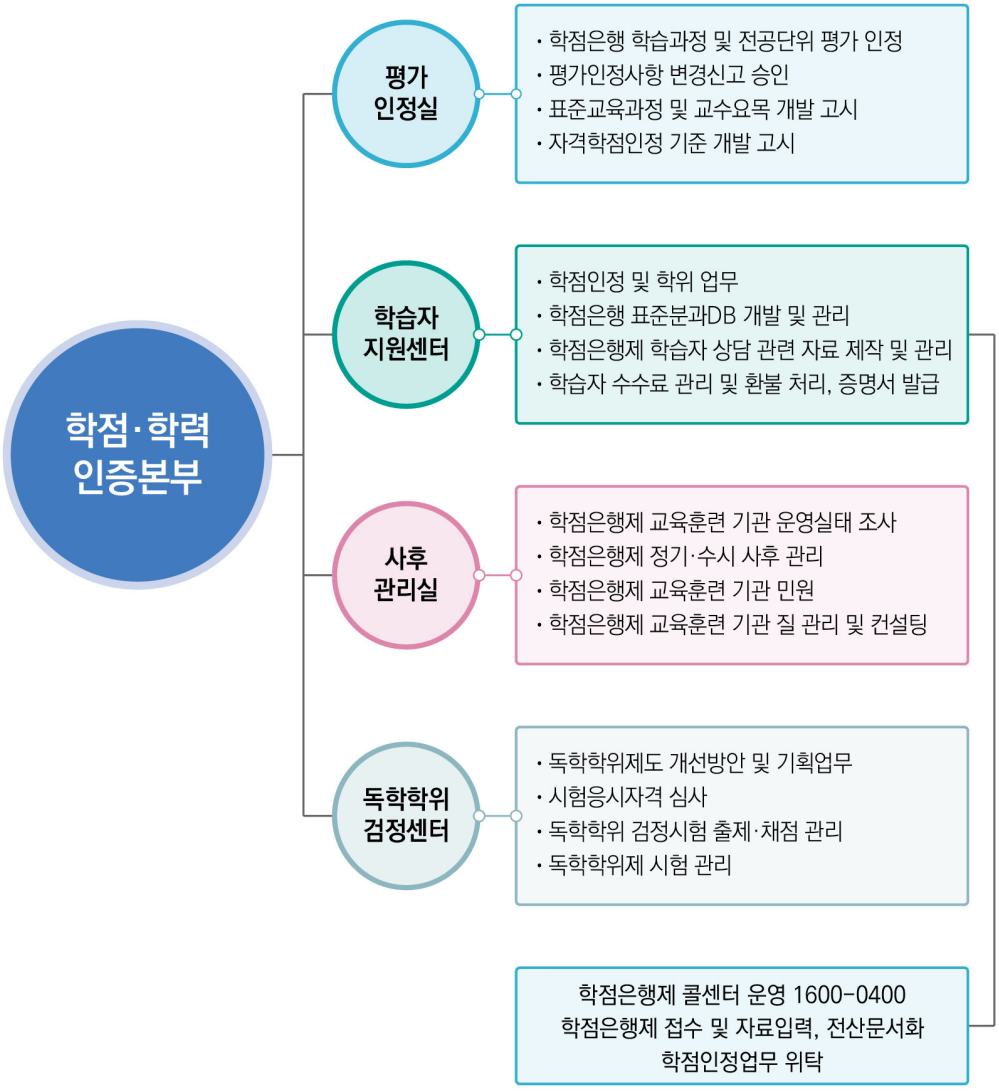

오시는 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국가평생교육진흥원 6층 학점은행지원센터

*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이용

1 1호선 시청역 5번 출구 → 시청 삼거리에서 좌회전(무교로방면) →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 시청 삼거리에서 우회전(무교로방면) → 할리스(커피숍) 건너편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청계광장 방면으로 서울파이낸스빌딩 옆)

5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 → 동아일보사 건너편 한국정보화진흥원 빌딩

버스 이용

'종로1가'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03, 109,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08, 470, 501, 506, 601, 606, 705, 710, 721, 720, 702A(서오릉)
- 지선버스 : 1020, 7018, 7212
- 광역버스 : 2500, 9701
- 경기버스 : (일반)111

'광화문(역)'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60, 260, 270, 273, 370, 470, 704, 710, 720
- 광역버스 : 9709
- 경기버스 : (일반)99, 1002 / (급행)8600, 8601 / (직행)9710

'서울신문사'에서 하차

- 간선버스 : 101, 150, 402, 501, 506, 405A
- 지선버스 : 1711, 7016

만든 사람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학력인증본부 학습자지원센터

박종오, 이은지, 오영창, 이진경, 박은희, 하민정, 강지원, 이은진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발행일	2021년 6월
발행인	강 대 중
발행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 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무교동 77) 전화: (국번없이)1600-0400 팩스: (02)3780-9855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02)761-0031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21년
학점은행제
상담도우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주 소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4
전 화 (국번없이)1600-0400
팩 스 (02)3780-9855
홈페이지 www.cb.or.kr